시 보

선	기관의 장
건	
람	

all ways INCHEON

제1701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18년 9월 17일 월요일

고	시		
○ 인천공	방역시고	제2018-215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류1호선) 실시계획(변·	경) 인가 고시) 2
○ 인천공	방역시고	제2018-216호(도시관리계획(연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
○ 인천공	방역시고	제2018-217호(인천도시계획시설(대2-35호, 십정2구역) 사업시행 저	· 지정 및 실시계획
. ∩I+J∓	LOI II 74	인가 고시)····································	
○인선경	5억시경	ㅏ유구역청고시 제2018-35호(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0, 61 % 16-1 = 1)	
공	고		
○ 인천공	방역시공	제2018-1278호(기부금품모집 변경 등록 공고)~~~~~~~~~~~~~~~~~~~~~~~~~~~~~~~~~~~~	35
○ 인천공	방역시공	제2018-1287호(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36
○ 인천공	방역시공	제2018-1295호(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수정) 공고)	37
○ 인천공	방역시공	제2018-1296호(제13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 공고)	44
		제2018-1297호(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제2018-1298호(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제2018-1303호(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고·열람)···································	
		제2018-1304호(공인 등록 공고)	
		제2018-1305호(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사유구역청공고 제2018-153호(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뉴 국 국 국 기 기 기 기 기 기 기	
	, 1110		
입받	예고		
○ 인천공	방역시입	고 제2018-87호(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78
		고 제2018-88호(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조례 일부	
○ 인천공	방역시입	고 제2018-89호(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5
○ 인천공	방역시의	·고 제2018-43호(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0
군	- 구		
		!시 제2018-130호(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	그여 지저(겨미하 벼겨)
~ 단언경	ゔㅋ^ ^	[시 세2010-130호(夫네우림아파트 수백세신국 정비세획 및 정비- 	
			
회 =:			전광역시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1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류1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류1호선, 사업명:남구 숭의동 128-53번지 일원 인도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4), 미추홀구 도시창생과(☎880-448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8. 9. 17.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28-53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 없음】
 - 【종류】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류1호선)
 - 【명칭】남구 숭의동 128-53번지 일원 인도개설공사
-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변경 없음】
 - 【면적】A=175.7㎡
 - 【규모】인도개설 L=25m, B=7m
-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 없음】
 - 【성명】류 재 문
 - 【주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661-9번지(매소홀로 474)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변경 있음]
 - 【당초】 2015. 10. 26 ~ 2018. 7. 30.
 - 【변경】 2015. 10. 26 ~ 2018. 11.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A 70 71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	소 유 자		이	해관겨	인
소재지	지 번	시크	시역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관계
미추홀구 숭의동	128-53	대	32.7	32.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661-9번지(매소홀로 474)	류 재 문			
ıı	162-14	도	177,259. 4	143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남구 숭의동 128-53번지 일원 인도개설공사」의 토지 및 도시계획시설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16호

도시관리계획 (연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연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연희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032-440-3653),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032-458-7184), 인천광역시 서구 공원녹지과(032-560-449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09. 17.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공원: 연희근린공원)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

3. 면 적 : 1,032,165.5㎡

4. 도시계획시설(연희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시설율 : 22.5%, 건폐율 : 0.15%)

· 변 경 - 시설율 : 22.5% · 녹지율 : 77.5% · 건폐율 : 0.15%

도시관리계획(연희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

·변 경 - 시설율 : 22.6% ·녹지율 : 77.4% ·건폐율 : 0.2%

		ı												
				변 :	경 전					변경			1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비고
	, "	(m²)	(m²)	동수 (동)	바닥면적 (m')	연면적 (m²)	(기)	(m²)	(m²)	동수 (동)	바닥면적 (m²)	연면적 (m')	(기)	,,
	계	1,064,529.8	240,871	9	2,045	3,370	100	1,032,165.5	232,460.0	8	1,575	2,430	98	연화공원 내 공촌천 경계조정등에 의한 공원면적감소 감 32,364.3㎡
	기 소계	54,867	54,867	ı	_	_	-	51,601	51,601	1	_	-	_	감3,266 m²
	반 지도로	46,007	46,007	_	_	_	-	44,377	44,377	-	-	-	-	감1,630 m²
공	설광장	8,860	8,860	_	-	-	-	7,224	7,224	_	-	-	-	감1,636 m²
원	조경시설	69,442	69,442	-	_	_	10	69,442	69,442	-	-	-	10	-
	휴양시설	7,590	7,590	_	-	-	64	7,590	7,590	_	-	-	64	_
시	유희시설	1,860	1,860	_	-	-	-	1,860	1,860	_	-	-	-	_
.,	운동시설	6,500	6,500	_	-	_	1	6,260	6,260	_	_	_	1	감240 m²
설	교양시설	28,746	28,746	1	855	1,710	-	28,377	28,377	1	855	1,710	-	감369 m²
	편익시설	14,500	14,500	5	440	440	3	14,500	14,500	5	440	440	3	-
	관리시설	10,816	10,816	3	750	1,220	22	6,280	6,280	2	280	280	20	감4,536㎡ 감2기
	도시농업 시설	46,550	46,550	-	_	_	_	46,550	46,550	ı	_	_	_	-
녹	지 및 기타	823,658.8	-	-	_	_	_	799,705.5	-	-	_	_	-	

나. 시설조서

					변 경	전]							변 경	후	-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m')	시설면적 (m')	구조	규모	건축됨 바닥 면적	물(m') 연면 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m²)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건축: 바닥 면적	물(m²) 연면 적	공작물 (기)	비고
	합 계	-	-	1,064,529.8	240,871	-	-	2,045	3,370	100	-	1	1,032,165.5	232,460.0	-	1	1,575	2,430	98	부지면적 김32,364.3㎡
	소 계	-	-	54,867	54,867	_	-	_	_	-	_	-	51,601	51,601	-	-	_	_	_	감3,266m²
	도 로	-	-	46,007	46,007	-	_	-	-	-	-	-	44,377	44,377	_	-	-	_	-	감1,630m²
	광 장	가	-	8,860	8,860	-	-	-	_	1	가	-	7,224	7,224	-	ı	-	_	_	감1,636m²
도로	동측진입광장	가-1	-	(1,416)	(1,416)	-	-	_	_	-	가-1	-	(1,416)	(1,416)	-	-	_	_	_	_
고 포	서측진입광장	가-2	-	(2,334)	(2,334)	-	_	_	-	_	가-2	-	(2,100)	(2,100)	_	-	-	-	-	(감234m²)
광 장	북측진입광장	가-3	-	(705)	(705)	-	-	_	-	-	가-3	-	(563)	(563)	-	-	-	-	-	(감142m²)
9 9	만남광장1	가-4	_	(1,033)	(1,033)	-	_	_	-	-	가-4	-	(1,033)	(1,033)	_	-	_	_	-	-
	만남광장2	가-5	_	(961)	(961)	-	_	_	-	-	가-5	-	(961)	(961)	_	-	_	_	-	-
	만남광장3	가-6	-	(500)	(500)	-	_	_	_	_	가-6	-	(500)	(500)	_	-	-	_	-	-
	만남광장4	가-7	-	(651)	(651)	-	_	_	_	-	가-7	-	(651)	(651)	_	-	_	_	-	-
	만남광장5	가-8	-	(630)	(630)	-	_	_	_	-	_	-	_	_	_	-	_	_	-	(김630m²)
	만남광장6	가-9	-	(630)	(630)	-	-	_	_	_	_	-	_	_	_	-	_	-	-	(감630m²)
7 H	소 계	-	_	69,442	69,442	-	_	_	_	10	_	-	69,442	69,442	-	-	_	_	10	_
조경	자연마당	나	-	69,442	69,442	_	-	_	_	-	나	ı	69,442	69,442	_	ı	-	-	-	_
시 설	관상용식수대	1	-	_	-	-	-	_	-	10	1	-	_	_	_	-	-	-	10	_

					-11 -11	_								-17 -17						
				I	변 경	7	전							변 경	후	•				
구 분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건축물		공작물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_	건축		공작물	비고
		부호	위치	(m²)	(m²)	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 적	(7))	부호	위치	(m²)	(m²)	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 적	(7])	·
	소 계	-	_	7,590	7,590	-	_	-	_	64	_	-	7,590	7,590	-	_	_	_	64	_
	쉼 터	다	_	7,590	7,590	-	-	-	-	_	다	-	7,590	7,590	_	-	_	_	-	-
	쉼터1	다-1	_	(424)	(424)	-	-	-	-	_	다-1	-	(424)	(424)	-	-	_	_	-	-
	쉼터2	다-2	-	(500)	(500)	1	_	-	-	-	다-2	-	(500)	(500)	-	-	-	-	-	-
	쉼터3	다-3	_	(310)	(310)	1	-	-	_	-	다-3	-	(310)	(310)	-	-	_	_	-	-
	쉼터4	다-4	_	(470)	(470)	1	ı	ı	_	-	다-4	-	(470)	(470)	-	ı	_	_	-	-
\$ AL-	쉼터5	다-5	_	(300)	(300)	ı	-	Ī	_	_	다-5	-	(300)	(300)	-	ı	_	_	-	-
휴 양 · 시 설	쉼터6	다-6	-	(390)	(390)	-	-	-	-	-	다-6	-	(390)	(390)	-	-	-	-	-	-
	쉼터7	다-7	-	(410)	(410)	-	-	-	-	-	다-7	_	(410)	(410)	-	-	-	-	-	-
	쉼터8	다-8	-	(500)	(500)	-	-	-	-	-	다-8	_	(500)	(500)	-	-	-	_	-	-
	쉼터9	다-9	-	(2,940)	(2,940)	-	-	-	-	-	다-9	_	(2,940)	(2,940)	-	-	_	_	-	-
	쉼터10	다-10	-	(1,346)	(1,346)	-	-	-	-	-	다-10	-	(1,346)	(1,346)	-	-	-	_	-	-
	파고라	2	-	-	-	ı	-	-	-	36	2	-	_	-	_	-	-	-	36	-
	앉음벽	3	-	_	_	-	-	-	_	4	3	_	_	-	_	-	_	_	4	-
	등의자	4	_	_	-	-	_	-	_	24	4	-	_	_	_	-	_	_	24	-

					변 경	7	전							변 경	후	_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m²)	시설면적 (m²)	구 조	규모	건축 바닥 면적	물(m²) 연면 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m')	시설면적 (m²)	구조	규모	건축 바닥 면적	물(m²) 연면 적	공작물 (기)	비고
	소 계	-	-	1,860	1,860	-	-	-	-	-	_	_	1,860	1,860	_	-	-	-	-	_
유 희	어린이놀이터	라	-	1,860	1,860	-	-	-	-	_	라	_	1,860	1,860	-	-	-	-	-	_
시 설	어린이놀이터1	라-1	-	(740)	(740)	-	-	-	_	-	라-1	_	(740)	(740)	-	-	-	-	-	-
	어린이놀이터2	라-2	-	(1,120)	(1,120)	-	-	-	-	-	라-2	_	(1,120)	(1,120)	_	-	-	-	-	-
	소 계	-	-	6,500	6,500	-	-	-	-	1	_	_	6,260	6,260	-	-	-	-	1	감240m²
	운동공간	마	-	6,500	6,500	-	_	-	_	-	마	_	6,260	6,260	-	-	-	-	_	감240m²
운 동	다목적운동장1	마-1	-	(2,160)	(2,160)	-	-	-	_	_	마-1	_	(2,160)	(2,160)	-	-	-	-	_	_
시 설	다목적운동장2	마-2	-	(3,200)	(3,200)	-	_	-	_	-	마-2	-	(2,960)	(2,960)	-	-	-	-	_	(감240m²)
	농 구 장	마-3	-	(1,140)	(1,140)	-	-	-	-	-	마-3	-	(1,140)	(1,140)	-	-	-	-	-	_
	체력단련시설	5	-	_	_	-	-	-	_	1	(5)	_	_	-	-	-	-	-	1	-
	소 계	-	-	28,746	28,746	-	-	855	1,710	-	_	_	28,377	28,377	-	-	855	1,710	-	감369m²
	교양공간	바	-	28,746	28,746	-	-	-	_	-	바	_	28,377	28,377	-	-	-	-	_	감369m²
	화 훼 원	바-1	-	(2,473)	(2,473)	-	-	-	_	-	바-1	_	(2,473)	(2,473)	-	-	-	-	-	-
교양	다목적학습장 (자연학습장등)	바-2	-	(2,388)	(2,388)	-	-	(855)	(1,710)	-	바-2	-	(2,388)	(2,388)	_	-	(855)	(1,710)		기정자연학습장 변경다목적 학습장 (자연학습장등)
	조류생태학습장	바-3	_	(10,062)	(10,062)	-	-	-	_	-	바-3	-	(10,062)	(10,062)	-	-	_	-	_	_
시 설	야외학습장	바-4	-	(1,464)	(1,464)	-	-	-	_	-	바-4	-	(1,464)	(1,464)	-	-	-	-		-
	역사교육장	바-5	-	(10,100)	(10,100)	-	-	-	_	-	바-5	-	(10,100)	(10,100)	-	-	-	-	-	-
	조류관찰대	바-6	-	(369)	(369)	-	-	-	_	-	-	_	_	-	-	-	-	-	-	(감369m²)
	숲관찰대	바-7	-	(790)	(790)	-	-	-	_	-	바-6	-	(790)	(790)	-	-	-	-	_	-
	수변생태학습장	바-8	_	(1,100)	(1,100)	-	_	-	-	_	바-7	_	(1,100)	(1,100)	-	-	-	-	-	_

											11									
					변 경		전							변경	후	-				
구 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m²)	시설면적 (m²)	구 조	규모	건축· 바닥 면적	물(m²) 연면 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m²)	시설면적 (m²)	구 조	규모	건축\ 바닥 면적	물(m²) 연면 적	공작물 (기)	비고
	소 계	_	_	14,500	14,500	-	_	440	440	3	_	_	14,500	14,500	-	_	440	440	3	-
	주 차 장	사	_	12,620	12,620	-	_	-	-	_	사	_	12,620	12,620	-	-	-	_	-	-
	서측주차장	사-1	_	(6,750)	(6,750)	-	_	_	_	_	사-1	_	(6,750)	(6,750)	-	-	_	_	-	-
	동측주차장	사-2	_	(5,870)	(5,870)	-	-	_	_	_	사-2	_	(5,870)	(5,870)	-	-	_	_	_	_
	화장실	아	_	880	880	-	_	440	440	_	아	_	880	880	-	_	440	440	-	-
- A)	서측화장실	아-1	_	(220)	(220)	-	_	(100)	(100)	_	아-1	_	(220)	(220)	-	_	(100)	(100)	_	-
편 익	북측화장실	아-2	_	(220)	(220)	-	_	(100)	(100)	_	아-2	_	(220)	(220)	-	-	(100)	(100)	-	_
시 설	동측화장실	아-3	_	(220)	(220)	_	_	(100)	(100)	_	아-3	_	(220)	(220)	-	_	(100)	(100)	_	_
	남측화장실	아-4	_	(110)	(110)	-	_	(70)	(70)	_	아-4	_	(110)	(110)	_	_	(70)	(70)	-	-
	남서화장실	아-5	_	(110)	(110)	-	_	(70)	(70)	_	아-5	_	(110)	(110)	-	_	(70)	(70)	_	-
	전망대	자	_	1,000	1,000	-	_	_	_	_	자	_	1,000	1,000	-	_	_	_	-	-
	연결브릿지	6	_	-	_	-	_	_	_	1	6	_	_	_	-	_	_	_	1	-
	자전거보관대	7	_	-	_	-	_	_	_	2	7	_	_	_	-	_	_	_	2	-
	소 계	_	-	10,816	10,816	-	_	750	1,220	22	_	_	6,280	6,280	-	_	280	280	20	감4,536㎡ 감2기
	관리사무소	차	-	7,606	7,606	-	_	750	1,220	_	차	_	3,070	3,070	-	_	280	280	-	감4,536m²
	관리사무소1	차-1	_	(1,790)	(1,790)	-	_	(120)	(120)	-	차-1	_	(1,790)	(1,790)	-	_	(120)	(120)	-	
관 리	관리사무소2	차-2	-	(4,536)	(4,536)	-	_	(470)	(940)	-		-	-	_	-	-	-	-	ī	(감4,536m²)
시 설	관리사무소3	차-3	-	(1,280)	(1,280)	_	_	(160)	(160)	-	차-2	-	(1,280)	(1,280)	-	-	(160)	(160)	-	-
	관리차고	카	-	3,210	3,210	-	_	-	-	_	카	_	3,210	3,210	-	-	-	-	-	-
	안내판	8	-	-	-	-	-	-	-	17	8	_	-	-	-	-	-	_	15	감 2기
	생태안내판	9	_	_	-	-	-	_	_	5	9	_	_	-	-	-	-	_	5	_

제1701호

					변 경	Ž	전							변 경	亨	<u>.</u>				
구 분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건축될	물(m²)	공작물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건축	물(m²)	공작물	비고
, –	,	부호	위치	(m²)	(m²)	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 적	(기)	부호	위치	(m²)	(m²)	조	규모	바닥 면적	연면 적	(기)	·
	소 계	_	_	46,550	46,550	-	_	_	_	-	_	_	46,550	46,550	-	-	_	-	-	-
	농업공간	타	-	46,550	46,550	-	_	_	-	_	타	-	46,550	46,550	_	_	-	-	_	-
도 시	도시텃밭1	타-1	-	(3,570)	(3,570)	-	_	-	-	-	타-1	-	(3,570)	(3,570)	-	-	-	-	_	-
농 업	도시텃밭2	타-2	-	(6,330)	(6,330)	-	_	_	-	_	타-2	-	(6,330)	(6,330)	-	-	-	-	_	-
시 설	도시텃밭3	타-3	-	(18,870)	(18,870)	-	-	_	-	_	타-3	-	(18,870)	(18,870)	-	_	-	-	_	-
	작목원	타-4	-	(14,120)	(14,120)	_	_	_	-	-	타-4	-	(14,120)	(14,120)	-	_	-	-	_	-
	도시농업용온실	타-5	_	(3,660)	(3,660)	-	_	-	_	_	타-5	-	(3,660)	(3,660)	_	_	-	-	_	_
	녹 지	_	_	823,658.8	-	-	_	_	-	-	_	_	799,705.5	-	-	_	_	_	_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m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합		계	-	10,858	46,007				감)1,630m²
변경	H		71I	_	9,733	44,377				有/1,030III
기정	소		계	_	270	3,240				변경없음
변경	<u> </u>		<i>7</i> 11	_	270	3,240				270 以日
기정	중로	2	122	15.0	1,180	(17,700)	집산도로	광로2-9	서측구역계	변경없음
변경	子子	2	122	15.0	(1,180)	(17,700)	집산도로	광로2-9	서측구역계	인성 방금
기정	중로	3	1	12	270	3,240	진입로	서측출입구	서측주차장	변경없음
변경	子子	3	1	12	270	3,240	진입로	서측출입구	서측주차장	인성 방금
기정	ž.		-1)1	-	9,534	40,679				7 .) 4002
변경	소		계	-	8,991	40,193				감)486 m²
기정	소로	3	1	6	1,285	7,710	연결로	동측지구계	서측진입구	H) 거 O) O
변경	江上	3	1	6	1,285	7,710	연결로	동측지구계	서측진입구	변경없음
기정	소로	3	2	6	76	456	연결로	쉼터9	소로3-16	ス)07 m²
변경	江上	3	2	3	181	543	연결로	쉼터9	소로3-51	증)87 m²
기정	入コ	3	3	6	19	114	연결로	소로3-23	소로3-2	버거어 O
변경	소로	3	3	6	19	114	연결로	북측지구계	소로3-2	변경없음
기정	入口	3	4	6	252	1,512	연결로	서측지구계	서측지구계	ろ) 4 F G m²
변경	소로	3	4	6	328	1,968	연결로	서측지구계	서측지구계	증)456 m²
기정) I	3	5	6	22	132	연결로	소로3-4	서측진입광장	Z)00 ²
변경	소로	3	5	6	27	162	연결로	소로3-4	서측진입광장	증)30㎡
기정	入コ	3	6	6	450	2,700	연결로	중로3-1	소로3-4	ng 거 어 O
변경	소로	3	6	6	450	2,700	연결로	중로3-1	소로3-4	변경없음
기정	入コ	3	7	6	72	432	연결로	서측진입광장	소로3-4	Z)CC2
변경	소로	3	7	6	83	498	연결로	서측진입광장	소로3-4	증)66 m²
기정	入口	3	8	4	268	1,072	연결로	중로3-1	소로3-1	H) 커 O) O
변경	소로	3	8	4	268	1,072	연결로	중로3-1	소로3-1	변경없음
기정	人口	3	9	6	70	420	연결로	소로3-1	관리사무소1	Hl 커 Ol O
변경	소로	3	9	6	70	420	연결로	소로3-1	관리사무소1	변경없음
기정	入口	3	10	6	11	66	연결로	서측진입광장	소로3-4	ス\co ²
변경	소로	3	10	6	21	126	연결로	서측진입광장	소로3-4	증)60 m²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m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入コ	3	11	6	79	474	연결로	만남광장5	소로3-16	ろ \2 010²
변경	소로	3	11	6	731	4,386	연결로	소로3-4	만남광장5	증)3,912㎡
기정	入曰	3	12	6	162	972	연결로	소로3-16	관리사무소2	71.)0792
폐지	소로	-	-	-	_	-	_	_	_	감)972 m²
기정	入曰	3	13	4	480	1,920	연결로	소로3-4	소로3-12	7k)1 000²
폐지	소로	-	-	-	-	_	_	_	_	감)1,920 m²
기정	, ¬	3	14	4	433	1,732	연결로	북서측지구계	소로3-16	Z)450 ?
변경	소로	3	12	4	547	2,188	연결로	북서측지구계	동측지구계	증)456 m²
기정	, ¬	3	15	4	78	312	진입로	만남광장6	소로3-16	7)\010 ;
폐지	소로	-	-	-	-	-	_	_	_	감)312 m²
기정	, ¬	3	16	4	428	1,712	연결로	소로3-34	소로3-23	7))1 710 /
폐지	소로	-	-	-	-	-	_	_	_	감)1,712m²
기정	2 =	3	17	3	150	450	연결로	만남광장2	만남광장3	버권하수
변경	소로	3	13	3	150	450	연결로	만남광장2	만남광장3	변경없음
기정	2 =	3	18	3	134	402	연결로	만남광장2	소로3-17	71) 6 2
변경	소로	3	14	3	132	396	연결로	만남광장2	소로3-14	감)6 m²
기정	2 =	3	19	3	96	288	연결로	만남광장4	족구장	Z)400 ²
변경	소로	3	15	4	194	776	연결로	만남광장4	소로3-48	증)488 m²
기정	, =	3	20	4	210	840	연결로	동측지구계	쉼터3	기 귀 시 스
변경	소로	3	16	4	210	840	연결로	동측지구계	쉼터3	변경없음
기정	, =	3	21	4	94	376	연결로	동측진입광장	소로3-20	17 7 A) A
변경	소로	3	17	4	94	376	연결로	동측진입광장	소로3-17	변경없음
기정	, -	3	22	3	(296)	(888)	연결로	소로3-33	동측지구계	(자연마당)
변경	소로	3	18	3	(296)	(888)	연결로	소로3-28	자연마당	변경없음
기정	, -	3	23	4	510	2,040	연결로	북측진입광장	서측지구계	3))O C (C)
폐지	소로	-	-	-	_	_	_	<u> </u>	_	감)2,040 m²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m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24	4	337	1,348	연결로	서측지구계	서측지구계	7 - \\1 240 m²
폐지	工上	-	_	-	_	-	_	_	_	감)1,348 m²
기정	2 =	3	25	4	13	52	진입로	서측지구계	중로3-1	3)0C 2
변경	소로	3	19	4	22	88	진입로	서측지구계	중로3-1	증)36 m²
기정	入コ	3	26	3	72	216	연결로	소로3-6	소로3-6	버거어 O
변경	소로	3	20	3	72	216	연결로	소로3-6	소로3-6	변경없음
기정	入コ	3	27	3	41	123	연결로	야외학습장	소로3-28	버거어 O
변경	소로	3	21	3	41	123	연결로	야외학습장	소로3-23	변경없음
기정	入コ	3	28	3	46	138	연결로	야외학습장	조류생태학습장	버거어 O
변경	소로	3	22	3	46	138	연결로	야외학습장	조류생태학습장	변경없음
기정	入コ	3	29	3	73	219	연결로	소로3-26	소로3-6	ろ \02
변경	소로	3	23	3	74	222	연결로	서측지구계	소로3-6	증)3 m²
기정	소로	3	30	3	192	576	연결로	소로3-6	소로3-6	버거어ㅇ
변경	工上	3	24	3	192	576	연결로	소로3-6	소로3-6	변경없음
기정	소로	3	31	3	118	354	연결로	중로3-1	소로3-29	버거어ㅇ
변경	<u> </u>	3	25	3	118	354	연결로	중로3-1	소로3-24	변경없음
기정	소로	3	32	4	(80)	(320)	연결로	소로3-38	소로3-48	(자연마당)
변경	오노	3	26	4	(80)	(320)	연결로	소로3-33	소로3-43	변경없음
기정	入コ	3	33	3	(75)	(225)	연결로	소로3-20	자연마당	(자연마당)
변경	소로	3	27	3	(75)	(225)	연결로	자연마당	자연마당	변경없음
기정	入コ	3	34	3	(114)	(342)	연결로	소로3-20	소로3-16	(자연마당)
변경	소로	3	28	3	(114)	(342)	연결로	소로3-11	자연마당	변경없음
기정	2 7	3	35	3	16	48	연결로	서측주차장	중로3-1	버권신스
변경	소로	3	29	3	16	48	연결로	서측주차장	중로3-1	변경없음
기정	2 7	3	36	3	23	69	연결로	서측주차장	중로3-1	HI 커싱 ^
변경	소로	3	30	3	23	69	연결로	서측주차장	중로3-1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m³)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入コ	3	37	3	211	633	연결로	중로3-1	소로3-38	7 .).c2
변경	소로	3	31	3	209	627	연결로	중로3-1	소로3-33	· 감)6m²
기정	, –	3	38	4	1,105	4,420	연결로	쉼터3	소로3-6	Z)1 105 ;
변경	소로	3	32	5	1,105	5,525	연결로	쉼터3	소로3-6	· 증)1,105㎡
기정	2 =	3	39	3	165	495	연결로	소로3-1	만남광장1	버권신호
변경	소로	3	33	3	165	495	연결로	소로3-1	만남광장1	변경없음
기정	, –	3	40	3	38	114	연결로	소로3-17	만남광장3	Z)00 ;
변경	소로	3	34	3	48	144	연결로	소로3-14	만남광장3	증)30m²
기정	, –	3	41	3	27	81	연결로	족구장	쉼터5	Z)10 ?
변경	소로	3	35	3	33	99	연결로	소로3-16	쉼터4	증)18㎡
기정	, –	3	42	3	57	171	연결로	족구장	만남광장3	7)100 2
변경	소로	3	36	3	21	63	연결로	소로3-37	만남광장3	· 감)108 m²
기정	, –	3	43	6	69	414	연결로	만남광장4	만남광장2	7)100 2
변경	소로	3	37	4	69	276	연결로	만남광장4	만남광장2	- 감)138 m²
기정	, =	3	44	3	113	339	연결로	동측진입광장	쉼터3	N 크 시 스
변경	소로	3	38	3	113	339	연결로	동측진입광장	쉼터3	변경없음
기정	2 =	3	45	4	93	372	연결로	동측진입광장	소로3-20	버권신호
변경	소로	3	39	4	93	372	연결로	동측진입광장	소로3-17	변경없음
기정	, -	3	46	6	20	120	연결로	동측진입광장	자연학습장	N T A A A
변경	소로	3	40	6	20	120	연결로	동측진입광장	자연학습장	변경없음
기정	, =	3	47	4	(124)	(496)	연결로	소로3-38	소로3-38	(자연마당)
변경	소로	3	41	4	(124)	(496)	연결로	소로3-17	소로3-27	변경없음
기정	,	3	48	3	242	726	연결로	소로3-32	소로3-38	13 21 61 6
변경	소로	3	42	3	242	726	연결로	소로3-27	소로3-33	변경없음
기정	, ¬	3	49	3	817	2,451	연결로	소로3-1	소로3-1	IN THALA
변경	소로	3	43	3	817	2,451	연결로	소로3-1	소로3-1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m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入コ	3	50	6	89	534	연결로	소로3-8	역사교육장	변경없음		
변경	소로	3	44	6	89	534	연결로	소로3-8	역사교육장	변경없음		
기정	λコ	3	51	3	178	534	연결로	쉼터6	쉼터7	배거어 O		
변경	소로	3	45	3	178	534	연결로	쉼터6	쉼터7	변경없음		
신설	소로	3	46	6	13	78	진입로	서측지구계	서측진입광장	증)78㎡		
신설	소로	3	47	6	35	210	연결로	소로3-49	다목적구장2	증)210 m²		
신설	소로	3	48	3	98	294	연결로	다목적구장2	소로3-48	증)294 m²		
신설	소로	3	49	3	4	12	진입로	북측지구계	만남광장3	증)12㎡		
신설	소로	3	50	3	120	360	연결로	남측지구계	소로3-44	증)360 m²		
신설	소로	3	51	3	125	375	연결로	북측지구계	소로3-12	증)375 m²		
기정	2	소 계		. 7 1 1		-	1,054	2,088				71.)1 1 4 4 2
변경	소		Al		472	944				감)1,144 m²		
기정	산책	-	1	2	585	1,170	산책로	소로3-13	소로3-16	7-)1 170 m²		
폐지	로	_	_	-	_	_	_	-	_	감)1,170 m²		
기정	산책	_	2	2	99	198	산책로	소로3-17	소로3-18	감)12m²		
변경	로	-	1	2	93	186	산책로	소로3-14	소로3-15	日/1/2III		
기정	산책	-	3	2	30	60	산책로	소로3-18	산책로2	감)10m²		
변경	로	_	2	2	25	50	산책로	소로3-15	산책로1	石/IUIII		
기정	산책	_	4	2	21	42	산책로	소로3-18	산책로2	감)12m²		
변경	로	_	3	2	15	30	산책로	소로3-15	산책로1	日月2III		
기정	산책	_	5	2	40	80	산책로	소로3-17	산책로2	배건성 Ó		
변경	로	_	4	2	40	80	산책로	소로3-14	산책로1	변경없음		
기정	산책	_	6	2	21	42	산책로	소로3-17	산책로2	7 1 \0_2		
변경	로	_	5	2	20	40	산책로	소로3-14	산책로1	감)2m²		
기정	산책	-	7	2	88	176	산책로	소로3-16	만남광장5	7 L)170 ²		
폐지	로	_	-	_	_	-	_	_	_	감)176 m²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m)	연장(m)	면적(m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n	_	8	2	(70)	(140)	산책로	동측지구계	산책로9	(자연마당)
변경	산책로	_	6	2	(70)	(140)	산책로	자연마당	산책로7	변경없음
기정	a) =11 ==	_	9	2	(395)	(790)	산책로	소로3-33	소로3-34	(자연마당)
변경	산책로	_	7	2	(395)	(790)	산책로	소로3-28	소로3-29	변경없음
기정) =11 - 7	-	10	2	(84)	(168)	산책로	자연마당	동측지구계	(자연마당)
변경	산책로	_	8	2	(84)	(168)	산책로	자연마당	동측지구계	변경없음
기정) -n	_	11	2	(126)	(252)	산책로	소로3-22	산책로9	(자연마당)
변경	산책로	_	9	2	(126)	(252)	산책로	소로3-19	산책로7	변경없음
기정) -n	_	12	2	(125)	(250)	산책로	소로3-20	소로3-33	(자연마당)
변경	산책로	_	10	2	(125)	(250)	산책로	자연마당	소로3-28	변경없음
기정) =11 =1	_	13	1.5	(200)	(300)	산책로	소로3-47	소로3-33	(자연마당)
변경	산책로	_	11	1.5	(200)	(300)	산책로	소로3-42	소로3-28	변경없음
기정	산책로	_	14	2	96	192	산책로	관리사무소1	소로3-1	변경없음
변경	앤색노	-	12	2	96	192	산책로	관리사무소1	소로3-1	せる訳言
기정	산책로	-	15	2	74	128	산책로	소로3-1	산책로14	변경없음
변경	U-7-	-	13	2	64	128	산책로	소로3-1	산책로12	COMP
기정	산책로	_	16	2	(28)	(56)	산책로	소로3-24	산책로8	(자연마당)
변경	C 1	_	14	2	(28)	(56)	산책로	소로3-29	산책로6	변경없음
신설	산책로	-	15	2	107	214	산책로	소로3-34	소로3-1	증214 m²
신설	산책로	-	16	2	12	24	산책로	소로3-35	소로3-34	증)24 m²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217호

인천도시계획시설(대2-35호, 십정2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 대로2류35호선, 사업명: 부평구 십정2구역 도시 계획도로(대2-35) 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4), 부평구청 미래도시과 (☎509-691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8. 9. 17.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23-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2류35호선)

【명칭】부평구 십정2구역 도시계획도로(대2-35)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대로 2-35호선 : L= 690m, B= 35-36m(사업구역 내 1차로 확장)

○ 사업면적 : 7,919.9㎡(기존시설(도로)면적 포함)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모	모		연장			사용	주요	*1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m)	기점	종점	형태	ァェ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2	35	40~ 44	주간선 도 로	3,750	대로2-29	동암역	일반 도로		인고 제22호 (1995.02.16)	
변경	대로	2	35	40~ 44 (35~ 36)	주간선 도 로	3,750 (690)	대로2-29 (십정동 223-10)	동암역 (십정동 527-12)	일반 도로		인고 제22호 (1995.02.16)	구역 내 확폭

주) 연장의 ()는 구역 내 연장, 폭원의 ()는 변화 폭원임

O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사업구간 폭원확장(L=690.0m)	•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대로	대로	• 폭원(B) = 28~32m → 35~36m	결과에 따라 대로2-35호선에 근린생활시설 진출입을
2-35	2-35	(기존폭원)	위한 가·감속차로와 버스정류장 완화차로를 확보
		(도시계획시설 도로폭원 40~44m)	하고자 함

5.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인천도시공사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O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1. 30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참조】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 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일련	4 TUT	7141	710	면적	ᅻ(m²)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부평구 십정동	223-10	전	133	31	국 (기획재정부)				
2	부평구 십정동	223-8	도	840	618	국 (건설교통부)				
3	부평구 십정동	223-14	도	2,272	59	국 (기획재정부)				
4	부평구 십정동	223-7	도	469	45	국 (기획재정부)				
5.01	부평구	543-14	도	243	243	인천도시공사(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5.02	십정동	313 11		213	213	인천도시공사(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6	부평구 십정동	216-299	도	50	50	국 (기획재정부)				
7	부평구 십정동	368	도1	3673.1	582	인천직할시				
8	부평구 십정동	216-300	도	66	66	국 (기획재정부)				
9	부평구 십정동	산80-1	임	151	151	김*옹	산81-*			
10	부평구 십정동	204-14	대	29	29	하*배	인천 연수구 선학동 397-** 우성주택 *-***			
11	부평구 십정동	204-1	대	44	44	권*국	204-*			
12	부평구 십정동	204-2	전	118	118	하*배	인천 연수구 선학동 397-** 우성주택 *-***			
13	부평구 십정동	산80-5	임	792	429	인천광역시				
14	부평구 십정동	305-18	대	300	72	대지권설정				
15	부평구 십정동	305-22	도	154	16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 로914번길 42(만수동)			
16.01						이준범(1/5)	305-25			
16.02						한*원(2/55)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 로 ***-*(십정동)	근저당	부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 제금융센터)(정비 사업금융2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16.03	부평구 십정동	305-25	대	294	93	한*원(7/55)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 로 ***-*(십정동)			
16.04						김*희(1/5)	인천광역시 부평로 부일로 69,10*동 ****호(부개동, 부 개역푸르지오)			
16.05						김*인(1/5)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 로 803,2***동 ****호(구월 동, 롯데캐슬골드)			
16.06	부평구 십정동					한*원(2/55)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 로 ***-*(십정동)			
16.07	부평구 십정동					인천도시공사(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17	부평구 십정동	305-29	도	148	17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 로914번길 42(만수동)			
18	부평구 십정동	산79-8	임	3,410	941	인천광역시				

일련	4 70 71	-1W	-10	면적	(m²)		소유자	관계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9.01						한*자(64.8/324)	인천 옹진군 덕적면 진리 산***-*	근저당	부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 제금융센터)(정비 사업금융2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19.02	부평구 십정동	305-32	대	324	97	박*옥(64.8/32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간석동)	근저당	부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 융센터)(정비사업 금융2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19.03	800					인천도시공사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 로914번길 42(만수동)				
19.04						안*수(64.8/324)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87번길 **-*, *동 ***호(만 수동, 석원맨션)				
19.05						인천도시공사 (64.8/32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 로914번길 42(만수동)				
20	부평구 십정동	305-36	도	158	17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 로914번길 42(만수동)				
21	부평구 십정동	305-39	대	178	41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 로914번길42(만수동)				
22.01						박*원(1/2)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26번길 **-*, *층(간석동)				
22.02	부평구 십정동	305-40	임	182	10	이*영(1/2)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26번길 **-*, *층(간석동)	근저당	부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 융센터)(정비사업 금융2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23	부평구 십정동	산79-14	도	637	292	인천광역시					
24	부평구 십정동	305-5	도	514	184	인천광역시					
25	부평구 십정동	305-137	 전	2	2	인천도시공사					
26	부평구 십정동	305-1	대	85	2	원*녀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 로**(십정동)	근저당	부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 융센터)(정비사업 금융2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27	부평구 십정동	305-151	전	4	4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 로914번지 42(만수동)				
28	부평구 십정동	366-3	도	4,521. 1	39	인천직할시					
29	부평구 십정동	366	도	22.5	22.5	인천직할시					
30	부평구 십정동	289-1	대	554.9	75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 로914번지 42(만수동)				
31	부평구 십정동	289	도	356	356	인천직할시					
32	부평구 십정동	289-3	대	371.5	47	장*복	2**-*	근저당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연수지점)	농업협동 조합중앙:	

일려				면적	₫(m²)		소유자		관계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33	부평구 십정동	289-6	대	373.8	48	0 *7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70 능곡 풍림아이원아파트 1**-****			
34	부평구 십정동	289-8	대	345.4	42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지 42(만수동)			
35	부평구 십정동	366-1	도	50.4	50.4	인천직할시				
36	부평구 십정동	293-15	대	315.4	46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지 42(만수동)			
37	부평구 십정동	293	도	573.9	573.9	인천직할시				
38.01	부평구 십정동	293-4	대	328.5	48	이*구(1/3)	십정동*	근저당	부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 융센터)(정비사업 금융2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38.02	부평구 십정동					인천도시공사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38.03	부평구 십정동					인천도시공사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39	부평구 십정동	293-5	대	284.1	41	이*구	십정동*	근저당	부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 제금융센터)(정비 사업금융2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40	부평구 십정동	293-8	대	139.8	8	이*구	십정동*	근저당	부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 현동, 부산국제금 융센터)(정비사업 금융2센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41	부평구 십정동	367	도	8,740. 4	1,455	인천직할시				
42	부평구 십정동	366-2	도	40.3	40.3	인천직할시				
43	부평구 십정동	295	도	345.6	345.6	인천직할시				
44	부평구 십정동	295-1	대	399	40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지 42(만수동)			
45.01	부평구 십정동	295-3	대	330.6	46	인천도시공사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45.02	부평구 십정동		"			인천도시공사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46	부평구 십정동	295-6	대	313.8	46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지 42(만수동)			
17	부평구 십정동	395-1	대	429.4	58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지 42(만수동)			
48	부평구 십정동	529	도	9,712. 6	96	인천직할시				
49	부평구 십정동	395-2	대	276.7	19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지 42(만수동)	근저당	서울특별시 중 구 소월로2길 30(남대문로5가)	㈜엘지 유플러스
50	부평구 십정동	395-3	도	80.8	80.8	인천광역시			(
51	부평구 십정동	527-10	도	40.4	40.4	인천광역시				
52	부평구 십정동	527-12	도	1,045. 5	3	인천광역시				

한 전 주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위치 (STA)	방향	전주번호	비고
1	부평구 십정동	223-14도	0+051.22	좌	동암간 24	
2	부평구 십정동	223-8도	0+101.21	좌	동암간 23	
3	부평구 십정동	368도	0+145.68	좌	동암간 22	
4	부평구 십정동	368도	0+180.69	좌	동암간 21	
5	부평구 십정동	산80-5	0+221.38	좌	동암간 20	
6	부평구 십정동	368도	0+261.41	좌	동암간 19	
7	부평구 십정동	산79-8임	0+300.64	좌	동암간 18	
8	부평구 십정동	산79-8임	0+340.53	좌	동암간 17	
9	부평구 십정동	산79-14도	0+363.94	좌	동암간 16	
10	부평구 십정동	305-5 도	0+386.19	좌	동암간 15	
11	부평구 십정동	367도	0+403.03	좌	동암간 14	
12	부평구 십정동	367도	0+460.85	좌	동암간 13	
13	부평구 십정동	367도	0+473.75	좌	동암간 12	
14	부평구 십정동	367도	0+485.96	좌	동암간 11	
15	부평구 십정동	367도	0+517.37	좌	동암간 10	
16	부평구 십정동	367도	0+560.99	좌	동암간 09	
17	부평구 십정동	367도	0+585.56	좌	동암간 08	
18	부평구 십정동	367도	0+607.14	좌	동암간 07	
19	부평구 십정동	367도	0+652.90	좌	동암간 06	

체 신 주 조 서

연번	소재지	지번	위치 (STA)	방향	전주번호	비고
1	부평구 십정동	305-5도	0+387.35	좌		
2	부평구 십정동	367도	0+417.50	좌		
3	부평구 십정동	367도	0+463.00	좌		
4	부평구 십정동	367도	0+587.58	좌		
5	부평구 십정동	367도	0+647.23	좌		

지장물(건축)대장 현황

번호	지번	소유자	대지 면적			건축면적			건축물 현황			비고
1	305-18	대지권설정	300	72	228	388.00	130.62	257.38	지상:2층 지하:1층	철근 콘크리트	근린생활 시설, 주택	1981.10. 10
2	305-25	이*범외6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	294	93	201	498.00	210.10	287.90	지상:1층	철근 콘크리트, 평스라브	근린생활 시설, 주택	1992.12. 19
	305-32	한*자외4인 인천 옹진군 덕적면 진리 산***-*	324	97	227	424.96	194.72	230.24	지상:2층 지하:1층	철근 콘크리트	근린생활 시설, 주택	1981.10. 10
3	305-39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 번길 42(만수동)	178	41	137	401.55	67.91	333.64	지상:4층 지하:1층	철근 콘크리트, 조적조	대피소, 소매점, 사무소	1990.05. 12
4	289-1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 번길 42(만수동)	554.9	75	479.9	1070.13	336.07	734.06	지상:3층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근린생활 시설, 교육연구 시설	-
	289-3	장*복 송림동***-* 삼익A */***	371.5	47.0	324.5	1431.64	77.95	1353.69	지상:6층 지하:1층	철근 콘크리트	다방, 소매점, 태권도장, 사무실, 의원, 독서실, 주택	1991.09. 05
5	289-6	손*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62번길 14, ***동 ****호(토당동, 금강케이씨씨아파트)	373.8	48.0	325.8	1493.55	81.96	1411.59	지상:6층 지하:1층	철근 콘크리트	다방, 일반음식점, 부동산중 개업소, 대중음식점, 치과의원, 의원, 사무소, 주택	1990.06. 25
6	289-8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 번길 42(만수동)	345.4	42.0	303.4	999.96	77.37	922.59	지상:4층 지하:1층	철근 콘크리트	근린생활 시설	1988.03. 19
	293-15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 번길 42(만수동)	315.4	46.0	269.4	1082.74	91.90	990.84	지상:5층 지하:1층	철근 콘크리트	이용원, 노래연습장, 금융업소, 의원, 당스크립, 당나무소	1988.10. 14

기 타 조 서

연번	소재지	위치 (STA)	방향	종 류	비고
1	부평구 십정동	0 + 023.49	좌	가스맨홀	
2	부평구 십정동	0 + 024.41	좌	가스맨홀	
3	부평구 십정동	0 + 034.68	좌	가스맨홀	
4	부평구 십정동	0 + 053.18	좌	한전맨홀	
5	부평구 십정동	0 + 055.13	좌	한전맨홀	
6	부평구 십정동	0 + 060.32	좌	가스맨홀	
7	부평구 십정동	0 + 114.53	좌	가스맨홀	
8	부평구 십정동	0 + 140.64	좌	전화부스	
9	부평구 십정동	0 + 201.80	좌	가스맨홀	
10	부평구 십정동	0 + 218.19	좌	통신맨홀	
11	부평구 십정동	0 + 234.35	좌	버스정류장	
12	부평구 십정동	0 + 268.44	좌	통신맨홀	
13	부평구 십정동	0 + 325.52	좌	주차요금정산BOX	
14	부평구 십정동	0 + 332.85	좌	통신맨홀	
15	부평구 십정동	0 + 465.78	좌	가스맨홀	
16	부평구 십정동	0 + 489.11	좌	가스맨홀	
17	부평구 십정동	0 + 493.56	좌	버스정류장	
18	부평구 십정동	0 + 493.04	좌	가스맨홀	
19	부평구 십정동	0 + 610.81	좌	주차요금정산BOX	
20	부평구 십정동	0 + 620.28	좌	한전맨홀	
21	부평구 십정동	0 + 625.24	좌	한전맨홀	
22	부평구 십정동	0 + 655.45	좌	한전맨홀	
23	부평구 십정동	0 + 627.27	좌	한전맨홀	
24	부평구 십정동	0 + 631.96	좌	한전맨홀	
25	부평구 십정동	0 + 631.20	좌	가스맨홀	

기 타 조 서(상수)

연번	소재지	위치 (STA)	방향	종 류	비고
1	부평구 십정동	0 + 049.12	좌	상수맨홀	
2	부평구 십정동	0 + 050.94	좌	상수맨홀	
3	부평구 십정동	0+82.41	좌	상수맨홀	
4	부평구 십정동	0+84.85	좌	상수맨홀	
5	부평구 십정동	0 + 091.87	좌	무인가압장1, 2	
6	부평구 십정동	0 + 091.75	좌	상수맨홀	
7	부평구 십정동	0+94.73	좌	상수맨홀	
8	부평구 십정동	0+98.31	좌	상수맨홀	
9	부평구 십정동	0+105.78	좌	제수밸브	
10	부평구 십정동	0+138.81	좌	상수맨홀	
11	부평구 십정동	0+334.05	좌	상수맨홀	
12	부평구 십정동	0+341.18	좌	소화전	
13	부평구 십정동	0+358.81	좌	상수맨홀	
14	부평구 십정동	0+373.69	좌	제수밸브	
15	부평구 십정동	0+375.02	좌	제수밸브	
16	부평구 십정동	0+376.94	좌	제수밸브	
17	부평구 십정동	0+378.27	좌	상수맨홀	
18	부평구 십정동	0+381.05	좌	유량계	
19	부평구 십정동	0+379.67	좌	제수밸브	
20	부평구 십정동	0+382.09	좌	제수밸브	
21	부평구 십정동	0+388.62	좌	상수맨홀	
22	부평구 십정동	0+390.76	좌	제수밸브	
23	부평구 십정동	0+391.22	좌	제수밸브	
24	부평구 십정동	0+393.07	좌	상수맨홀	
25	부평구 십정동	0+401.47	좌	제수밸브	
26	부평구 십정동	0+402.71	좌	제수밸브	
27	부평구 십정동	0+403.62	좌	제수밸브	
28	부평구 십정동	0 + 403.01	좌	소화전	
29	부평구 십정동	0+570.23	좌	상수맨홀	
30	부평구 십정동	0+570.26	좌	상수맨홀	
31	부평구 십정동	0+587.94	좌	제수밸브	
32	부평구 십정동	0+660.08	좌	상수맨홀	
33	부평구 십정동	0+680.33	좌	상수맨홀	

기 타 조 서 (가 로 등)

연번	소재지	위치 (STA)	방향	종 류	비고
1	부평구 십정동	0 + 045.63	좌	가로등	
2	부평구 십정동	0 + 080.83	좌	가로등	
3	부평구 십정동	0+114.45	좌	가로등	
4	부평구 십정동	0+144.23	좌	가로등	
5	부평구 십정동	0 + 177.50	좌	가로등	
6	부평구 십정동	0 + 204.96	좌	가로등	
7	부평구 십정동	0+239.25	좌	가로등	
8	부평구 십정동	0+266.95	좌	가로등	
9	부평구 십정동	0+296.40	좌	가로등	
10	부평구 십정동	0+322.91	좌	가로등	
11	부평구 십정동	0+354.48	좌	가로등	
12	부평구 십정동	0+383.48	좌	가로등	
13	부평구 십정동	0+417.13	좌	가로등	
14	부평구 십정동	0+450.46	좌	가로등	
15	부평구 십정동	0+478.01	좌	가로등	
16	부평구 십정동	0+511.12	좌	가로등	
17	부평구 십정동	0+546.08	좌	가로등	
18	부평구 십정동	0+575.37	좌	가로등	
19	부평구 십정동	0+612.35	좌	가로등	
20	부평구 십정동	0+673.67	좌	가로등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8-21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36호(2017. 8.28.)로 고시된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인하대학교 인천산학융합지구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 조성계획면적, 사업명칭, 시행자성명, 준공예정일, 자금조달계획 변경
-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용지(Sd-3) 건축한계선 정정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 1. 단위개발 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없음

가. 목 적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m²)	구성비(%)	비고
	합계	2,401,744.7	100.0	
 주태	소계	273,085.1	11.4	
주택 건설 용지	공동주택	263,967.5	11.0	
용 지 	근린생활시설	9,117.6	0.4	
	소계	166,532.0	6.9	
상업	주상복합	12,958.0	0.5	
상업 업무 용지	일반상업	69,496.8	2.8	
0 1	지식기반산업지원상 업	84,077.2	3.6	
	소계	801,756.1	33.4	
사어	지식기반서비스	94,525.6	3.9	
산업 시설 용지	지식기반R&D	18,476.2	0.8	
풍시	지식기반제조업	376,190.8	15.7	
	테크노파크시설	312,563.5	13.0	
	소계	1,160,371.5	48.3	
	교육시설	102,525.7	4.3	
	공공업무	4,000.1	0.2	
	공원	195,127.0	7.9	
고고	녹지	173,694.3	7.2	
공공 시설 용지	공공공지	7,112.3	0.3	
풍시	광장	981.4	0.1	
	공공주차장	29,634.2	1.2	
	체육시설	20,771.3	0.8	
	폐기물처리시설	1,600.0	0.1	
	도로	624,925.2	26.2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7-29호(2017. 6. 5.)

- 3. 단위개발 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 4.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 없음
-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변경 없음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 없음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 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지식기반산업지원상업용지(Sd-3) 건축한계선 정정
-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붙임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변경
- 9.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 032-453-7544) 에 갖추어 놓음
 - 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다.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변경

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학교25(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변경)

세부시설명		기 정		변	경	비고	
		면적(m²)	구성비(%)	면적(㎡)	구성비(%)	H 17	
<u></u> 합계		33,223.8	100.0	33,223.8	100.0		
교 연	- 기 본 , 구 시 설	9,655.2	29.0	10,729.0	32.3	교육시설, 연구시설 등	
연 -	구 시 설	6,628.7	20.0	6,398.0	19.3	연구시설, 실험실 등	
 부대	녹 지	6,296.6	19.0	6,180.0	18.6	조경 및 녹지	
	기타시설	6,424.4	19.3	4,730.8	14.2	도로	
시설	주차시설	4,218.9	12.7	5,186.0	15.6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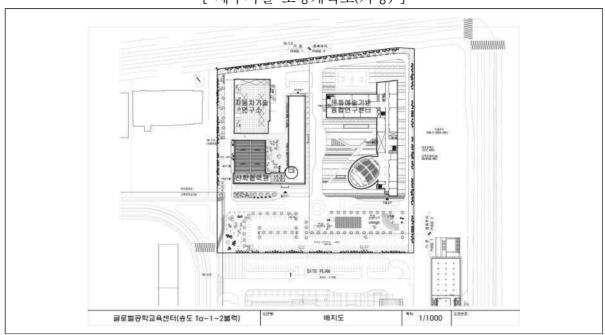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5	학교	 에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건축부지(교육기본·연구시설, 연구시설): 16,283.9㎡ → 17,127.0㎡(증 843.1㎡) ※ 녹지, 도로, 주차장 면적 변경 	○ 인하대학교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신축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 획(건축부지면적 및 부대시설)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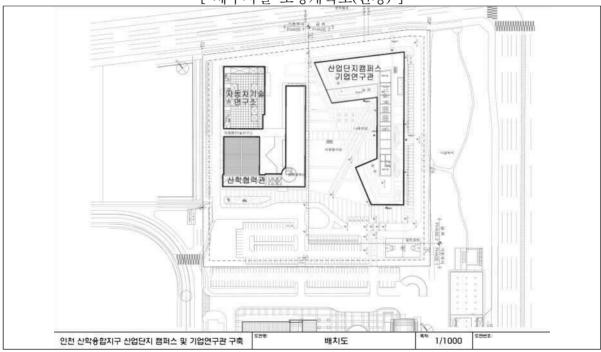
나. 학교(대학) 건축물 조서(변경)

- u	건물	-1 -1	_ ,	건축	면적	연민	변적	
구 분	번호	건물명	충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합	계		8,212.99	8,805.51	25,210.73	27,406.31	
교육기본 시설, 연구시설	1	문화예술기반 용합센터 → 산업단지캠퍼스· 기업연구관	5	3,757.76	4,350.28	17,677.91	19,873.49	
연구시설	2	산학협력관	3	2,828.62	2,828.62	5,326.53	5,326.53	
연구시설	3	자동차기술연구소	2	1,626.61	1,626.61	2,206.29	2,206.29	

[세부시설 조성계획도(기정)]



[세부시설 조성계획도(변경)]



2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대학교)

○ 사업의 명칭 : (기정) 문화예술기반 글로벌 정보기술 융합연구센터 구축

(변경) 인천산학융합지구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구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성 명 : (기정)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하대학교(총장 박춘배)

(변경)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와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명세서(변경)

○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소유자(성명)
인천시 연수구	7-49	대지	33,223.8 m²	학교법인
송도동	7-49	네시	33,223.0111	정석인하학원

○ 건물(변경)

소재지 지번		므리이 조리	그고 미 그거	건축면	[적(㎡)	소 () 기(워크)	비고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기정	변경	소유자(성명)	비끄
인천시		연구소, 시험생산공장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2,828.62	2,828.62	학교법인	
연수구	7-49	연구소	철근콘크리트	1,626.61	1,626.61	정석인하학	
송도동		교육시설, 연구시설 등	철근콘크리트	3,757.76	4,350.28	원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 착수예정일 2014년 12월, 준공예정일 2018년 12월 31일

○ (변경) : 착수예정일 2014년 12월, 준공예정일 2020년 12월 31일

5. 자금조달계획(변경)

		금액(박	 비고	
T	亡	기정	변경	P122
건 축 공	사	5,197	20,000	
토목・조경	공 사	2,384	1,500	
기계설비	공 사	3,993	6,000	
전기 · 통신	공 사	7,056	4,000	
소 방 공	사	1,206	500	
합	계	32,088	32,000	

③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변경)

1. 공사 설계도서(변경)

 구 분	내	비 고	
一	기 정	변 경	<u>пі т</u>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49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교육연구시설용지 대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49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교육연구시설용지 대3	변경없음
대지면적	33,223.8 m²	33,223.8 m²	변경없음
지역 /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변경없음
	강의동, 행정동, 연구소, 시험생산동	강의동, 행정동, 연구소, 시험생산동	변경없음
연면적	25,210.73 (지상:22,194.60㎡, 지하:3,016.13㎡)	27,406.31 (지상:26,241.20㎡, 지하:1,165.11㎡)	증)2,195.58
건축면적	8,212.99 m²	8,805.51 m²	증)592.52
 건폐율	24.7	26.5	40%이하
용적률	66.8	79.0	100%이하
높 이	지하1층~지상5층	지하1층~지상5층	5층이하
주차대수	234 대	220 대	감)14대

[※] 산업단지캠퍼스·기업연구관 신축에 따른 건축계획 및 조성계획 변경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278호

기부금품모집 변경 등록증

등록번호 제2018 - 3호

(재)새얼문화재단(이사장: 지용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장

- O 모집목적 : 죽산 조봉암선생 동상건립 기금마련 지원
- O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목표액 : 현금 및 물품 800,000,000원
- O 모집지역 : 인천 및 전국 시·도
- O 모집방법 : 모금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인터넷 홍보
- 모집기간 : (**당초**) 2011. 8. 18. ~ 2018. 8. 31.

(변경) 2011. 8. 18. ~ 2019. 8. 31.

- 사용기간 : 2018. 9. 1. ~ 2019. 8. 31.
- O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 금융기관예치
- O 모집비용 : 30,000,000원(모집금액의 15%이내 가능)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신흥동3가)

정석빌딩 신관 803호(Tel 032-885-3611)

- O 기타사항(보고서 제출 및 공고의무 이행)
- 모집기간이 만료(만료일전이라도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 하여야 하며, 모집기간 만료일(만료일전 모집목표액 도달일)로부터 30일내에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부자 등이 모집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열람이 가능 하도록 모집 및 사용내역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하며,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내역** 보고서와 회계감사기관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함.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287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 9. 11.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 호	단체명 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면 이 원일 일 기회	주된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구분	비고
제2001-0- 인천광역시 -24호	(사)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83 (주안동)	장석희	2001. 4. 12	°교통 보조근무 및 청소년 범죄 예방	032) 872–1057	교통정책과	(대표자)	변경 등록일 (2018. 9. 1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295호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수정) 공고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공익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참여 감정평가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수정) 공고 합니다.

2018 년 9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장

- □ 공고기간: 2018. 9. 12.(수) ~ 2018. 9. 18.(화)
- □ 공고내용

가. 참여사업

연번	사업명	규 모	추 정 감정가액	의뢰부서	선정 수
1	「주안10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현금 청산자 보상 액 평가	 위치: 미추홀구 주안동 1545-2 일원 감정평가대상 토지 116필, 건물 111건, 영업권 70건 	340억원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정 비사업 조합	1개업자
2	주택재개발정비사	이 위치: 남동구 간석동 519-9 일원이 감정평가대상- 토지 93필 및 지장물 등,영업권 46건	327억원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 비사업 조합	1개업자
3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재산 평가	이 위치: 중구 해안동4가 1-1일원외 감정평가대상 공영주차장 12개소	261억원	인천시설공단 (주차팀)	1개업자
4	「삼산1구역 주택재 개발정비사업」 현금청산자 등 보 상액 평가	ㅇ 감정평가대상	250억원	부평구 (주거환경정책과)	1개업자

5	「주안1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평가	 이 위치: 미추홀구 주안동 1452-2 일원 아 감정평가대상 - 토지 134필, 지장물 64건, 영업권 99건 	248억원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2개업자
---	----------------------------------	---	-------	------------------	------

- ※ 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참여사업 규모에 대한 변경(취소 등 포함)이 발생될 수 있음.
- ※ 해당사업 참여제한(기(旣)참여 등) 감정평가업자
 -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현금 청산자 보상액 평가 : 『대일감정원』, 『한국씨티』
 -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현금 청산자 보상액 평가 : **『대일감정원』, 『써브』, 『통일』**
 -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수용재결 평가 : 『대화』, 『하나』, 『세종』,

나. 신청자격

- 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 ②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 ③ 공고일 현재 인천지역 소재 감정평가업자(주·분사무소 포함)
- ④ 소속 감정평가사 수 : 공고일 현재 3인 이상(심사자 포함 자격취득 이후 평가 실무경력 1년 이상 감정평가사)
- 다. 신청기간 : 2018. 9. 12. ~ 2018. 9. 18.(18:00)
- 라.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시청 내 IDC건물 1층)

마. 제출서류

- ①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서식 1)
- ② 법인등기·인가증(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 ③ 업무제안서(서식 2)

- ④ 업무제안서의 수행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의사항)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와 감정평가 수행계획 작성 시 해당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이름 포함)를 표시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글자, 기호, 표식, 문양 등 일체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기재 시 선정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언무실적) 대상사업 1회 이상 참여 감정평가업자 중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발행한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제출(*목록은 별도 제출)
 - ※ 평가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감정평가금액이 1건당 100억 원 이상 국가(공공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가 시행한 사업임.

□ 기타 유의사항

-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 :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심의 선정(발주부서 개별통지)
- 나. 책임 감정평가사는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제6조제1 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감정평가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함
- 다. 업무제안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사후업무지원 서비스와 감정평가 수행 계획 작성 시 주의사항 준용
 - 감정평가 수행계획서 및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 계획은 구분 하여 각각 2매 이내 구체적 작성
- 라. 업무제안서 내용 및 제출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민·형사상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마.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 판명 또는 불가피한 사유(부도 등)로 인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순위 자가 선정업자로 결정

- 바. 참여 신청접수(우편물 접수포함)는 2018. 9. 18.(화) 18:00까지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접수 분에 한하여 유효 함
- 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책임 임
- 아. 감정평가 참여사업의 세부내용은 아래 발주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안10구역 조합(☎ 032 423 3297)
 -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백운주택1구역 조합(☎ 032 424 8717)
 -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인천시설공단 주차팀((☎ 032 570 7151)
 - 삼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부평구 주거환경정책과(☎ 032 509 6933)
 -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032 440 3765)
 - 자.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부동산평가팀(☎ 032 440 4597) 으로 무의하시기 바랍니다.

[스	1	

감정평가업자 참여 신청서

□ 참 여 사 업	:
-----------	---

□ 감정평가업자:

구	분	내	8	비	卫
감정평	가업자				
주	소				
대 3	또 자				
감정평기	가사 수				
전 화	/ FAX				
설 로	길 일				
7]	타			* 소유자 추천 사유 기재	

※ 상기 법인은「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실과 신의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참여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감정평가법인(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2]

업 무 제 안 서

□ 참여사업:

감정평가업자			사무소 소재지		
	개인				
감정평가사 수 (명)	법인	주사무소			
(- /	百七 	분사무소			
	○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		
	○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	력(자격취득 이후)	
	○ 평가실적 : 공고일 이전 최근 3년 간 1건당 100억 원 이상				
	감정평가금액 및 증빙자료(작성 예시 참조)				
수행능력 등	*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대체 기능				
	○ 보험 등 가입여부				
	○ 행정처분(과태료,과징금,주의,경고 등) 및 소속 감정평가사 징계여부				
	: 공고일 이전 최근 2년간(한국감정평가사협회 징계유무확인서 등)				
	○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 등 : 별지 2장 이내로 구체적 작성				
감정평가	○ 참여	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평		
수행계획	작성				
기타 의견	* 소유지	· 추천 등 제외신	청 사유 기재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이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민ㆍ형사상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감정평가법인(인)

※ 본 양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평가실적 (최근 3년간 1건당 100억 원 이상 감정평가금액)

연번	사	업	명	발주부서	감정평가서 제 출 일	감정평가금액	비	고
총계								
1								
2								
3								

- ※ 평가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감정평가금액이 1건당 100억 원 이상 국가(공공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가 시행한 사업임.
- ※ 평가실적 합계는 상단 총계 란에 반드시 기재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자격취득 이후)

الد احم	,1	l	7) 1 4 6) 6)	리코리드Al	감정평가	실무경력	nl –
연번	성	넝	명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근무기관	기 간(년월)	비 고
						~ (년월)	
1						~ (년월)	소계 년 월
						~ (년월)	
						~ (년월)	
2						~ (년월)	소계 년 월
						~ (년월)	
						~ (년월)	
3						~ (년월)	소계 년 월
						~ (년월)	
계	평균	실 실	구경력 :	년 월			

※ 참여하는 감정평가사 전원을 기재하며, 평균 실무경력은 *자격취득일 이후 참여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을 합한 후 총 참여 감정평가사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296호

제13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지역경제와 물류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물류개선을 이른 기업, 단체 또는 개인을 발굴 포상하여 물류산업분야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글로벌 물류 경쟁력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2018년 『제13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신청안내

- O 추천자
 - 물류관련 기관·단체·기업 대표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 * 본인 직접신청 가능

2. 시상훈격 및 종류

- O 훈 격 : 인천광역시장
- O 부문 및 대상

구분(수상부문) 인원			추천 및 응모대상
———— 계		4	
기 업	본 상	1	- 인천 소재 기업 또는 주요사업 활동지역이 인천인 업체로서 ·물류산업분야 사업실적 우수기업,
	특별상	1	· 할 규칙 답문하 사업을적 구구기업, · 타 업체의 수범 또는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이룩한 우수 기업
ᅰᄭᆔᄆᆝᄃᄔᆀ	본 상	1	- 市 물류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
개인 및 단체	특별상	1	- 물류 관련 협회 또는 단체, 학계 등에서 물류 관련 연구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3. 시상일정

가. 서류접수 : 2018. 10. 01.(월) ~ 10. 12.(금), 12일간

나. 수상자 발표 : 2018. 11월중(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다. 시 상 : 2018. 12월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접수 및 서류제출

가.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항만과 항만산업팀

- 인천 연수구 갯벌로12, 1404호(송도동 미추홀타워), 우편번호 21999

나. 접수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접수마감일 소인에 한함)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구분	기업 및 단체	개 인
제출 서류	 추천(신청)서 1부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포상 동의서(피 추천인) 현지조사확인서(추천인)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재무제표 사본(최근 3년간)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1부 	 추천(신청)서 1부 공적조서 및 증비자료 각 1부 이력서(사진첨부) 1부 포상 동의서(피 추천인) 현지조사확인서(추천인)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 행정 →고시/공고 →검색창 → 제13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 공고 (추천서 등 다운로드가능)

라. 추천제한 대상

- 1)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 및 1년 이내 동일 훈격 표창 불가 (수여일 기준)
-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가)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바)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사)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3)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4) 지방세 체납자: 지방세 체납자는 완납 후에 표창 추천가능
 - ※ 표창 추천 및 수여 이후 사회적 물의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창 심사대상 제외 및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항만과(☎032-440-48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물류발전대상 추천(신청) 제출서류 [서식 1~7]

[서식 1]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신청)서

(개인용)

부	문			
성	명	(한글)	(한자)	
·	소			
생년월 (성별	<u>l</u> 일 l)		전화번호	
		О		
공적요	약	0		
공적요 (추천사	·유)	0		
		О		

상기인(본인)을 제13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수상후보자로 추천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① 공적조서 1부
- ③ 기타서류(이력서 등) 1부
- ② 공적증빙자료(PPT 등) 1부
- ④ 현지조사확인서 1부

2018년 윌 일

성명 <추천(신청)인> 직위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2]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신청)서

(기업/단체용)

부 문			
기업(단체)명			
대표자명	(한글)	(한자)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0		
공적요약	О		
(추천사유)	O		
	0		
](단체)을 제13회 인치) 합니다.	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수상후	-보자로

[첨부서류]

① 공적조서 1부

- ② 공적증빙자료(PPT 등) 1부
- ③ 기타서류(사업자등록증,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최근3년 간 재무제표 등)
- ④ 현지조사확인서 1부

2018년 윌 일

<추천(신청)인> 직위 성명 (직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3]

공 적 조 서

(개인용)

(앞면)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소 속	직 위 (직급)	
특기사항	공적기간	
	고 되 ㅇ 되 /기라늬에 되게!	

공 적 요 지 (간략하게 기재)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인] 성명

			(뉫면)
	주요 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주요경력	년 월 일	주요경력
		7) -) -) -	
	포상 및	징계기록	
년 월 일	주요내용	년 월 일	주요내용
	공 적	내 용	

[서식 4]

공 적 조 서

(기업/단체용)

(암면)

	(72	C /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_ (법인등록번호)	
주 소		
소속	공적기간	
특기사항		
	공 적 요 지 (간략하게 기재)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뒷면)
	주요	경력	
년 월 일	주요경력	년 월 일	주요경력
	포상 및	 징계기록	
년 월 일	주요내용	년 월 일	주요내용
	공 적	내 용	

□ 공적조서 작성요령

- 포상은 수상 순으로 빠짐없이 기재
- 공적내용은 사례위주로 계량화·구체화하여 작성
 - 물류발전·혁신·개선 주요활동 및 그 성과
 - 물류산업발전 기여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 기타 수상자격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 기재
- ㅇ 공적기간
 - 개인: 재직증명서 상의 최초 발령일을 기산일로 포상 공고일 까지 의 월수로 환산, 이직 경우 동일업무분야 근무기간 인정
 - 기업(단체): 설립 시부터 환산하여 산출

□ 공적내용 증빙자료 작성요령

- 증빙자료는 A4로 작성
- 관련 이미지, 사진, 보도기사 등 사실검증 자료 삽입
- 분량은 10페이지 내외
- 기타 증빙자료

□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 작성 시 인사기록카드 형식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정확한 학력(입학, 졸업 연월일), 경력(입·퇴사 연월일) 기재
 - 학력 및 경력사항과 과거포상 및 징계, 형벌 구분 작성

[서식 5]

		이 력 서	
\ \	진	성 명 홍 길 동 (弘 吉 童) 성 별(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E-m	ail	T E L H ∙P	
년 :	월 일		발 령 청
		과거 포상 및 징계, 형벌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작성자 : (인)

[서식 6]

|소속(주소)|

□ 표차 ㅎㅂ지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П жо	ナエベ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공적조서 작성, 공적사실 확인, 포상대장 관리, 시장표창계획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등 표창 추천 및 기록에 관한 사항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주요학력 및 경력, 과거 표창기록,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포상대장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또는 주소, 직위 또는 직급)는 영구 보유
 - 부서별 표창추천서류에 기록되는 개인정보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지방세 납부 여부>

시장표창 계획에 따라 표창대상자의 지방세 성실납부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표창 추천일 현재 체납액이 있을 경우 시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 아니오 **□ બા**

위 본인은 표창과 관련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계획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세 납부사실이 거짓으로 확인되어 시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7]

현지조사 확인서

1. 인적사항

기관(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속	직급(직위)
도로명 주소	
추 천 분 야	

2. 현지조사 확인내용

구	분	조	사	내	<u>Q</u>	
공적 <i>/</i> 사실	가항 며부					
추천제한 확인이	<u>.</u> 대상 부부					
인품 및 / (개약	성품 등 인)					
재정건경 (기업/]성 등 단체)					
물류 기 여	발전 도					
조 사 종합 ⁹	· 자 의견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윌 일

<확인(추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297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제320338호	㈜제이에스티앤랩 이 철 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비동 807호,808호,813호 (송도동, 송도비알씨스마트밸리)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298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등록말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9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

상 호 (대표자)	등 록 말소일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사유	비고
채우코리아나(주) (이 승 호)	2018. 9. 13.	인천 150008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124, 10층 (운서동, 한스빌딩)	사업 종료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03호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공고・열람

2018. 7. 9.(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62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강화소방서, 도로: 소3-1호) 사업 시행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오며, 그 주소·사는 곳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통지받을 분을 알 수 없을 때는 위 법률에 따라 이 공고 내용으로 갈음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 9. 17.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27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 명칭: 강화소방서 이전부지 조성공사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강화소방서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강화군 강화읍 남문로 23번길 11)

4.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O 열람기간: 2018. 9. 17. ~ 2018. 10. 1.(14일간)
- O 의견제출: 공익사업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열람장소

- O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2, 연수구 갯벌로 12)
- 인천광역시 강화군청(도시개발과, 032-930-3806, 강화읍 강화대로 394)
- 6. 관계서류: 거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끝.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04호

공인 등록 공고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17.

인 천 광 역 시 장

- 1. 등록사유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071호('18.4.16.)에 따른 소방관서 신설
- 2. 최초사용연월일 : 2018. 10. 15.
-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참고

등록 공인명 및 인영

인천남동소방서 서창119안 전센터장인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8-1305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비고
한반도건설㈜	이진성	2018.9.14.	인천180014	750,000천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65번길 39, 5층 502호 (구월동, 대진빌딩)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8-153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 명령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 09. 1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1. 제 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 2. 공고기간: 2018. 9. 13. ~ 2018. 10. 05.(15일 이상)
- 3. 대상자(송달)

~ ~ ~	건축주		위반건축물	현황		OHUI O	반송
연번	(행위자)	대지위치	구조	구조 용도		위반내용	사유
1	김상진	운서동2833-3 (유진낚시)	천막/파이 프	소매점	27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위반	폐문부재
2	유기성	을왕동179-66 (구 돌무개 여관)	판낼조	주택	253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위반	폐문부재
3	김윤조	운북동 1053	컨테이너	창고	22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위반	폐문부재
4	김성겸	덕교동 676-4	판넬조	샤워장	40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위반	수취인불명
5	황정길	운서동 2854-4 (현대낚시)	철파이프조	소매점	53.2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위반	폐문부재
6	김종진	을왕동 206-28	판넬	음식점	25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위반	폐문부재

4. 통지내용

대상자	통지 요지	철거 기한 (의견제출 기한)	มอ
김상진 외 5	건축법 위반건축물 철거 등 시정명령	2018. 8. 16.	

5.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032-453 -7753:신준영)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8-326호

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1류19호선, 중로3류140호선, 소로 1류20호선, 사업명 : 도시철도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도로확장공사 | 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 17.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도시철도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도로확장공사

나.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공촌동 일원

다. 사업 규모: 대로1류19호선 : L=975m, B=33.5m~43m

중로3류140호선: L=21.25m, B=12m 소로1류20호선 : L=22.25m, B=10m

라.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2. 보상계획

가. 보상 대상: "토지 조서" 참조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은 지적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상 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함.

-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 (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 다.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지(`18년 12월 예정)
- 라. 보상액의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 단, <u>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u>에 보상대상 <u>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u> <u>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u>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마. 보 상 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 람 기 간 : 2018. 9. 17.(월) ~ 2018. 10. 12.(금) ※ 15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나. 열 람 장 소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4층) 총무부 보상1팀 (☎ 032-440-516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 421-18)

다. 열 람 방 법 :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라. 이의신청방법: 토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편입 토지

소재지	지 번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7필지)	685,218-5,613-4,613-11,706,산65-1,613-12,707-1,487-44,산64-10,615-5,산71-7,708,227-6,616-9,229-6,710-1,산72-19,산72-17,617-9,231-4,244-57,산72-15,244-59,244-58,244-50,산72-20,244-45,산72-26,산72-27,산72-29,산72-28,244-55,244-53,244-24,244-54,244-56,산72-16,산87-6,244-61,산87-8,산87-9,산85-1,244-60,산86-5,252-8,637-3,725,253-2,251-27,251-26,652-11,251-44,727-1,665-12,740-1,740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8필지)	51-92,51-52,51-90,산30-10,산30-26,산30-27,47-4,294-4

5. 지장물 등 : 위 토지상의 대상 지장물 등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incheon.go.kr) 및 개별 통지문 참조

6. 기타사항

-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손실보상협의 안내 시에 개별통지 합니다.
- 다.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보상1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2-440-5164)

전체 편입용지조서(1)

이려						편입면	!적(M²)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당	명 권리외 종류	비고
1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685	도로	3716.6		46.0	인천광역시 서구	궈0				
2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218-5	도로	4411.0		402.9	인천광역시	공				
3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613-4	공원	76.3		76.3	인천광역시 서구	공				
4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613-11	공원	26.4	26.4		인천광역시 서구	공				
4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613-11	공원	26.4		26.4	인천광역시 서구	공				
5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706	도로	150.2		150.2	인천광역시 서구	공				
6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산65-1	도로	4110.0		4110.0	인천광역시	공				
7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613-12	공원	250.9	250.9		인천광역시 서구	공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613-12	공원	250.9		250.9	인천광역시 서구	공				
8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707-1	모	16.5	16.5		인천광역시 서구	공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707-1	도로	16.5		16.5	인천광역시 서구	공				
9													
3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487-44	도로	194.0		194.0	기획재정부	국				
10													
10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산64-10	임야	12.0		12.0	인천광역시	공				

전체 편입용지조서(2)

익려						편입면	적(M²)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마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외 종류	비고
11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615-5	공원	185.5	185.5		인천광역시 서구	F10							
''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615-5	공원	185.5		185.5	인천광역시 서구	70							
12																
12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산71-7	도로	2331.0		2331.0	인천광역시	공							
13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708	도로	3689.5	250.0		인천광역시 서구	Fl0							
13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708	도로	3689.5		250.0	인천광역시 서구	F10							
14																
14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227-6	도로	4490.0		4490.0	인천광역시	Fl0							
15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616-9	공원	357.6	357.6		인천광역시 서구	F10							
15	변 변	인천 서구 검암동	616-9	공원	357.6		357.6	인천광역시 서구	궈0							
16																
10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229-6	도로	34.0		34.0	인천광역시	공							
17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710-1	도로	16.5	16.5		인천광역시 서구	궈							
17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710-1	도로	16.5		16.5	인천광역시 서구	공							
18																
10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산72-19	도로	100.0		100.0	인천광역시	공							
19																
13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산72-17	구거	930.0		930.0	인천광역시	궈0							
20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617-9	공원	146.3	146.3		인천광역시 서구	70							
20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617-9	도로	146.3		146.3	인천광역시 서구	괹							

전체 편입용지조서(3)

이건						편입면	적(M²)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판 구	소 재 지	지 번	지목	마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외 종류	비고
21															
21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231-4	도로	88.0		88.0	인천광역시	70						
22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244-57	임야	151.0	151.0		인천 서구 심곡동 330-1 **아파트 ***	0 **						
22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244-57	임야	151.0		151.0	인천광역시	구0						
23															
23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산72-15	임야	3016.0		3016.0	인천광역시	다0						
24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244-59	임야	40.0	40.0		인천광역시 서구	구0						
24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244-59	도로	40.0		40.0	인천광역시 서구	다0						
25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244-58	임야	7.0	7.0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316-1 ***아파트 ***	김**						
25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244-58	임야	7.0		7.0	인천광역시	다0						
26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244-50	임야	38.0	38.0		인천광역시	다0						
20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244-50	임야	38.0		38.0	인천광역시	줘0						
27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산72-20	임야	7.0		0.7	인천광역시	공						
	0	CC AI BB6	272 20	- O VI	7.0		6.3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강** 외 1인						
28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244-45	전	41.0	41.0		검암동 ***	강**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244-45	전	41.0		41.0	인천광역시	굉						
29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산72-26	임야	69.0		69.0	인천광역시	공						

전체 편입용지조서(4)

이권						편입면	적(M²)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외 종류	비고
30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산72-27	임야	97.0		10.0	인천광역시	공							
	116	20 NT 668	선12-21	6 VF	97.0		87.0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강** 외 1인							
31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산72-29	임야	10.0		1.0	인천광역시	공							
	10	CE AII GGS	272 23	- O Vr			9.0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강** 외 1인							
32																
52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산72-28	임야	138.0		138.0	인천광역시	고							
33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244-55	대	254.0	254.0		인천광역시	구0							
33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244-55	대	254.0		254.0	인천광역시	고							
34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244-53	대	168.0	168.0		검암동 ***	강**							
04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244-53	대	168.0		168.0	인천광역시	구0							
35																
35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244-24	도로	6905.0		6905.0	인천광역시	고							
36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244-54	전	421.0	421.0		경남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강** 외 1인							
30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244-54	전	421.0		421.0	인천광역시	F0							
37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244-56	임야	38.0	38.0		검암동 ***	학교법인 ***							
31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244-56	임야	38.0		38.0	인천광역시	Fl0							
38																
30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산72-16	임야	19.0		19.0	인천광역시	70							

전체 편입용지조서(5)

이려						편입면	적(M²)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구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외 종류	비고
39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산87-6	임야	223.0		159.2	인천광역시	줘0							
	0	CE AIT BBS			220.0		63.8	인천 북구 부평동 ***	홍**							
40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244-61	임야	106.0	106.0		인천 북구 부평동 ***	홍** 외 1인							
40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244-61	임야	106.0		106.0	인천광역시	戌0							
4.4																
41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산87-8	임야	167.0		167.0	인천광역시	0FJ							
42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산87-9	임야	10.0		7.1	인천광역시	공							
	0	CE AIT 008			10.0		2.9	인천 북구 부평동 ***	홍**							
43																
40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산85-1	도로	71.0		71.0	산림청	국							
44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244-60	임야	56.0	56.0		기획재정부	국							
7-7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244-60	임야	56.0		56.0	인천광역시	굉							
45																
45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산86-5	도로	999.0		999.0	인천광역시	0H							
40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252-8	구거	10.0	10.0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 사							
46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252-8	구거	10.0		10.0	인천광역시	공							
47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637-3	대	18.4	18.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540번길 59, ***(***아이파크)	주식회사 ***							
41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637-3	대	18.4		18.4	인천광역시	F10							

전체 편입용지조서(6)

0124						편입면	적(M²)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외 종류	비고
48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725	도로	4320.8	292.0		인천광역시 서구	무0					
40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725	도로	4320.8		292.0	인천광역시 서구	줘0					
49														
43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253-2	답	6.0		6.0	남구 용현동 ***	강**					
50														
50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251-27	도로	3602.0		3602.0	인천광역시	공					
51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251-26	도로	230.0		230.0	국토교통부	국					
52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652-11	공원	454.5	454.5		인천광역시 서구	공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652-11	공원	454.5		454.5	인천광역시 서구	공					
53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251-44	전	3.0		3.0	연희동 ***	최**					
54														
	변경	인천 서구 공촌동	51-92	도로	4.0		4.0	인천광역시	공					
55														
	변경	인천 서구 공촌동	51-52	도로	1911.0		1911.0	인천광역시	공					
56														
	변경	인천 서구 공촌동	51-90	도로	119.0		119.0	인천광역시	공					
57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727-1	도로	27.5	27.5		인천광역시 서구	구0					
57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727-1	도로	27.5		27.5	인천광역시 서구	공					

전체 편입용지조서(7)

[사업명 : 도시철도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도로확장공사]

0174						편입면	적(M²)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지목	공부	당초	변경	주 소	명 성	주		소	성	명	권리외 종류	비고
58	변경	인천 서구 공촌동	산30-10	임야	103.0		103.0	산림청	뀨								
59																	
59	변경	인천 서구 공촌동	산30-26	임야	235.0		235.0	인천광역시	F10								
60	변경	인천 서구 공촌동	산30-27	임야	321.0		260.3	산림청	국								
				3 %1	92773		60.7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	학교법인 ***								
61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665-12	공원	203.5	203.5		인천광역시 서구	H0								
01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665-12	공원	203.5		203.5	인천광역시 서구	궈								
62																	
02	변경	인천 서구 공촌동	47-4	도로	2847.0		2847.0	인천광역시	F10								
63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740-1	도로	97.8	97.8		인천광역시 서구	궈0								
00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740-1	도로	97.8		24.0	인천광역시 서구	궈								
64																	
04	변경	인천 서구 공촌동	294-4	도로	100.0		5.0	국토교통부	국								
65																	
05	변경	인천 서구 검암동	740	도로	9199.5		22.0	인천광역시 서구	궈0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666-5	공원	91.9	91.9		인천광역시 서구	RO								

전체 편입용지조서(8)

[사업명 : 도시철도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도로확장공사]

일려			TI UI	H TIS 70		편입면:	적(M²)	소 유 자		관 계 인			
일련 번호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외 종류	비고
	당초	인천 서구 검암동	745	도로	2509.6	26.0		인천광역시 서구	Fl0				
	당초	인천 서구 공촌동	293-1	하천	1859.0	42.0		건설교통부	국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555-1	하천	2249.0	90.0		건설교통부	국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42-9	하천	44.0	15.0		인천광역시	F10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42-5	제방	67.0	35.0		인천광역시	공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42-11	잡종	84.0	24.0		인천광역시	궈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42-12	잡종	105.0	105.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	김**	서울특별시중구 통일로120	농협은행 주식회사	근저당 및지상권 설정	
												20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43-7	답	50.0	50.0		공촌동 ***	최** 외4인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44-33	답	36.0	36.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 장미연립 ***	0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32	부천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설정	
											_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44-34	답	73.0	73.0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51 **마을 ***	노**	부산광역시수영구 광남로***	노**	근저당 설정	
								· -					
	<u> </u>	1		<u> </u>		1	1	<u> </u>	<u> </u>	1	I	1	

전체 편입용지조서(9)

[사업명 : 도시철도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도로확장공사]

					편입면	적(M ²)	소 유 자		관 계 인			
구분	소 재 지	지 번	지목	공부	당초	변경		장	주 소	성 명	권리외 종류	비고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44-35	주유	24.0	24.0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 ***	0 **	서울특별시중구 태평로2가120	주식화사 신한은행	근저당 설정	
다 굿	이런 내그 여희도	25_15	다	2.0	2.0		인천 부평구 부평동 ***	71++				
 	한선 시구 인의공	35-15	<u> </u>	2.0	2.0		**빌라 ***	죄**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30	답	1.0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번길 ***	최**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31	다	7.0	7.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최**				
							면길 *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44-36	답	23.0	23.0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 ***	박**				
	당초 당초 당초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44-35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15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30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31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44-35 주유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15 답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30 답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31 답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44-35 주유 24.0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15 답 2.0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30 답 1.0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31 답 7.0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44-35 주유 24.0 24.0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15 답 2.0 2.0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30 답 1.0 1.0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31 답 7.0 7.0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44-35 주유 24.0 24.0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15 답 2.0 2.0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30 답 1.0 1.0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31 답 7.0 7.0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당초 변경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44-35 주유 24.0 24.0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 ****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15 답 2.0 2.0 인천 부평구 부평동 ****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30 답 1.0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번길 ****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31 답 7.0 7.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당초 변경 선명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44-35 주유 24.0 24.0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 이**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15 답 2.0 2.0 인천 부평구 부평동 *** 최**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30 답 1.0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 최**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31 답 7.0 7.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 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당초 변경 성명 주소 당초 인천 서구 연회동 44-35 주유 24.0 24.0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 이*** 서울특별시중구 대평로2가120 당초 인천 서구 연회동 35-15 답 2.0 2.0 인천 부평구 부평동 **** 최** 당초 인천 서구 연회동 35-30 답 1.0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 최** 당초 인천 서구 연회동 35-31 답 7.0 7.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 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소성명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44-35 주유 24.0 24.0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 이** 서울특별시중구 중식화사 전환으행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15 답 2.0 2.0 인천 부평구 부평동 **** 최**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30 답 1.0 1.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 최** 당초 인천 서구 연희동 35-31 답 7.0 7.0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 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변경 생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구소 소리의 구시화상 근처당 근처당 교육 교육

		0	9	a 1	신	청	서		
□ 사업명	: 도시철	<u> </u> 도2호선 2	04공구 '	일원 서	곶로 .	도로확장 [.]	공사 (조서변	<u> </u> 호 :)	
	성명 또	는 명칭							
신청인	생 년	월 일				전호	화번호		
	주	소							
이의신 토지 및									
이의신청	의 요지								
이의신청	이의신청의 이유								
		한 토지 등 내용에 디] 제15조의 합니다.	규정에 의기	시 보상계획
	2018년 월 일								
	신청인 ⑩								
인천광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기타	증빙자료 1-	<u> </u>						

<< 감정평가업체 추천동의서 >>

□ 사업명 : 도시철도2호선 204공구 일원 서곶로 도로확장공사

EχÌ	펴인	편입	지분		토지 소유자			낙이	추천
조재지 지번 면적 (m²)		(0/0)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지택 또는 휴대전화)	(서명)	감정평가업자	
	토지 소재지		- 비	토지 편입 편입 (0/0) 소재지 기번 (m²) 기분 (0/0)	토지 A대지 면입 면적 (m²) 지분 (0/0) 성명	토지 소재지 편입 면적 (m²) 지분 (0/0) 성명 주민등록번호	토지 설계 편입 면적 (mi) 지분 (0/0)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비 면적 (0/0) 서면 즈미드로비호 조소 전화번호	소재지 지배 면적 (0/0) 서면 조미드로바흐 조소 전화번호 (사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u>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u>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 <u>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u>하여야 합니다. (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87호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9. 13.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와 공공토론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나.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 다.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12조)
- 라.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소통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구월동) 소통담당관실

(2) 연락처 : 전화) 032-440-2417, FAX) 032-440-8722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술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공론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론화"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합의된 공론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2. "공공정책"이란 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립하는 정책(자치법규의 제· 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3. "공공갈등"이란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관련된 민원을 말한다.
- 4. "공공토론"이란 공공갈등을 조정·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이해관계인, 일반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실하는 토론을 말한다.
- 제3조(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공론화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현안 시책 추진 등 시정 전반의 쟁점사안 등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 2. 공론화 의제별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3. 공공토론의 실시 및 진행, 결과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시장이 지명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3. 공공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갈등관리 전문가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제2항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한다)중 호선된 1명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15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통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공공토론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위원회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공공토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론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공공토론의 기간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하되, 충분한 토론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공공토론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공공토론의 공정한 진행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를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추진위원회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추진위원회는 공공토론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공공토론 종료 후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의결 후 위원회에 제출하면 자동해산 한다.
- **제12조(공론화추진위원회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 한다.
 - 1. 공공토론 실시를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2. 공공토론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 3. 공공토론을 진행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사항
 - 4. 공공토론 실시 결과 작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출석 및 자료의 협조 등) ① 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전문가, 해당 실·국·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정보의 제공 및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및 해당 공무원은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결과의 공개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 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의결한 공공토론 실시 결과를 공공토론 종료 후 20일 이내 해당 안건과 관련 부서 실·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해당 실·국장 등은 공통토론 실시결과에 대한 의견을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결과를 최종 의결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토론 실시결과 및 제2항의 해당 부서 검토사항. 제3항에 따른 결과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및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88호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 9.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및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확대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상 "학자금 이자지원"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으로 명칭 변경 (조례명, 안 제1조부터 제9조 및 안 제15조부터 제16조)
- 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고등교육기관의 정의를 반영함. (안 제2조 제3호)
- 다. 수혜대상 확대를 위한 대학생의 정의 및 지원 대상을 개정함

(안 제2조, 제3조)

- (현행) 저소득가정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
-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개정)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중
 -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10분위 중 8분위 이하 대학생
 - ·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3. 의격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4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 광역시 교육협력담당관실(☎032-440-217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① 주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 ② 전화: 032) 440-2173, Fax: 032) 440-8629
- ③ 전자우편 : ysun1106@korea.kr

붙임: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학생 (대학원생을 제외한다)으로서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을"을 "국내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과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으로서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6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대학"을 "시설"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학자금 이자지원"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학자금 이자지원)"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10분위 중 8분위이하에 해당되는 대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제4조의 제목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

중 "학자금"을 각각 "학자금대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학자금"을 각각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위탁 등)"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업무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하다.

제3장의 제목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 위원회"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학자금"을 각각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8조제1호를 "제3조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2호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지원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중복금지)"로 하고. 같은 조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학자금"을 "학자금대출"로 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관한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	제1조(목적)
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대학생들에	
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u>학자금</u> 이자지원에	<u>학자금대출</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학자금</u> 이자지원"이란 「한국	1. " <u>학자금대출</u>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한	
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	
다)으로부터 대출 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학생"이란 제1호의 학자금	2
대출을 받은 <u>학생(대학원생을 제</u>	<u>국내 대학(교)에</u>
외한다)으로서 신청기준일 현재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과
1년 이상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u>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u> 으로서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
는 학생을 말한다.	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이하
<u> </u>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3. "고등교육기관"이란 <u>법 제2조</u>	3 <u>법 제2조</u>
<u>제2호</u> 의 학교 또는 <u>대학</u> 을 말한	제6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다.	<u>시설</u>

현 행	개 정 안
제2장 <u>학자금 이자지원</u>	제2장 <u>학자금대출 이자지원</u>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 인천광역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	제3조 <u>(학자금대출 이자지원)</u>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u>학자금</u>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u>학자금대출</u> -
1. <u>정부의 이자지원을 받는 저소득</u> <u>가정의 대학생</u>	1. <u>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10</u> 분위 중 8분위 이하에 해당되는 <u>대학생</u>
2. <u>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등 학자금</u> <u>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u> <u>다고 인정되는 대학생</u>	2. <u>다자녀 가구의 대학생</u>
3. (신설)	3.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u> <u>하는 대학생</u>
제4조(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 <u>(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의</u> 수립·시행) ① <u>학자금</u> 대출
1. <u>학자금</u>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 에 관한 사항	1. <u>학자금대출</u>

현 행	개 정 안
2. <u>학자금</u>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 에 관한 사항	2. <u>학자금대출</u>
3. 그 밖에 <u>학자금</u> 이자지원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	3 <u>학자금대출</u>
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은 시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삭제)
③ 시장은 <u>제2항에 따라 학자금</u> 이 자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련 고등교육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u>학자금대출</u>
제5조(학자금 이자지원 신청)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이 지정 하는 기관에 <u>학자금</u> 이자지원 신청	제5조 <u>(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u> <u>학자금대출</u> <u>학자금대출</u>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위탁등)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연구의 회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군수, 구청장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의 위탁 등) <u>학자금대출</u>
제3장 <u>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u>	제3장 <u>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u>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설치) 시장은 <u>학자금</u> 이자지원	제7조(설치) <u>학자금대출</u>
대상, 조건, 금액,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u>학자금</u>	<u>학자금대출</u>
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제8조(기능)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	1. <u>제3조제3호에 관한 사항</u>
한 사항	
2. 그 밖에 <u>학자금</u> 이자지원에 필	2 <u>학자금대출</u>
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생 략)	제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
당연직 위원은 교육지원담당관이	교육지원업무담당부서장-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학 <u>학자금</u> 관련 분야에 전문	3 <u>학자금대출</u>
지식을 지닌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	제15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중복
<u>지)</u>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급지)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 또는 <u>학자</u>	<u>학</u> 자
급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	금대출
외한다.	
제16조(수급자격의 정지) 수급자로	제16조(수급자격의 정지)
확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	
을 중단한다.	
1. 대학생이 타 시·도로 전출한 경	1. (삭제)
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사유로 <u>학자금</u> 이자지	3 <u>학자금대출</u>
원이 부적정한 경우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지원"이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 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 생으로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8-89호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9. 17.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수탁자를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근로자문화센터의 시설 대관시 사용료를 유료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유사 목적의 타시설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근로자문화센터의 사용료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나.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수탁자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일자리경제과, 전화: 032-440-4273, 팩스: 032-440-86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사용료) ① 시장은 근로자문화센터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
 - ②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행사 및 기타 공익을 위한 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와 근로자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

나.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 90퍼센트 반환

제7조 중 "민간 또는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을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근로자문화센터 시설 사용료(제4조의 1 관련)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7 8	71 5	사용	를료	비고
구 분	기 준	평일	휴일	미포
강의실	1회(1시간)	10,000	평일요금의 20%가산	○ 평일 : 월 ~ 금 ○ 휴일 : 토, 일(공휴일 포함) ○ 매시간 초과시마다 20% 가산 ○ 야간대관은 평일의 20%,
냉난방	1회(1시간)	10,000	10,000	휴일의 30%를 가산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8-43호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 참여위워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09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및 연속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 분야를 확대하고, 임기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계획·건축·문화·조경·환경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항제2호)
- 나. 전문가 확보의 지속성 및 연속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연임 제한의 완화(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09월 27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 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udu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조, 제2조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건축·문화분야의"를 "도시계획·건축·문화·조경· 환경분야에"로 한다.

제5조의 본문 중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4조(구성) ①~② (생략)

행

혅

-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위원회를 관 ③ ------련하는 국장 등과 부평구 부구 청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 천하는 5인 이내 시의원이 되 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 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생략)
 - 2. 도시계획·건축·문화분야의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5. (생략)

④ (생략)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개 정 안

- - 1. (현행과 같음)
- 2. 도시계획·건축·문화·조경·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며, <u>1회에 한하여 연임</u> 으로 하며, <u>연임할 수 있다.</u> 다만, <u>할 수 있다.</u> 다만, 보궐위원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 5.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라 함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 6.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 7.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8. "시·도지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말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라 함은 동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구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30호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40호(2012.6.11.)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41-3번지 일원의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경미한 변경)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경관과(032-560-459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 9. 17.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없음)
- 위 치 :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 면 적 : 15,244.5 m²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변경)

①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 조서(변경)

		규	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대로	1	11	35~39 (3.5)	주간선 도 로	6,250 (108)	석남동 광3-9	대로 1-13	일반 도로		건고제54호 (70.02.09)	
변경	대로	1	11	35 (35~39) [3.5]	주간선 도 로	6,250 [108]	석남동 광3-9	대로 1-13	일반 도로		건고제54호 (70.02.09)	
기정	중로	1	57	20~33 (2)	보조간선 도 로	3,500 (172)	청천동 대3-17	석남동 대2-29	일반 도로		건고제658호 (68.10.23)	
변경	중로	1	57	20 (20~33) [2]	보조간선 도 로	3,500 [172]	청천동 대3-17	석남동 대2-29	일반 도로		건고제658호 (68.10.23)	
기정	중로	3	325	12	국 도 로	70	소로 2-52	롯데우람 정비구역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2	8~12 (4)	국 지 도 로	167 (50)	소로 2-447	중로 1-57	일반 도로			
변경	소로	2	52	8 (8~12) [4]	국 지 도 로	167 [50]	소로 2-447	중로 1-5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4	6~10 (4)	국 지 도 로	363 (122)	중로 2-38	대로 1-11	일반 도로			
변경	소로	3	34	6 (6~10) [4]	국 지 도 로	363 [122]	중로 2-38	대로 1-1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35	6	국 지 도 로	180	중로 2-38	소로 2-52	일반 도로			

기정 ※ ()는 구역 내에 관한 사항,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변경 ※ []는 구역 내에 관한 사항,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②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IJ서대	위 치		면 적(㎡)		최 초	비고	
十七	구분 보 호 시설명 번 호	시설성	기 시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UI <u>1</u> 2	
기 정	1)	주차장	서구 석남동 491-5번지 일원	368	-	368	_	조성후 무상귀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비고
기 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일부조항 상업지역 완화기준 적용가능

5. 건축물의 주용도·건페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역	구 분	획 지	구 분				용적률		
결정 구분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용도	건폐율	정비계획	예정법적 상 한 용 적 률	높이 층수	
			획지1-1	13,029.5	주상복합	45.0%이하	450%이하	485%이하	84m0 ā	
			획지1-2	368	노외주차장	_	-		_	
기정	롯데 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5 244 5	획지 1-1	용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써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80%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일반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 시설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운제외) 					
			획지 1-2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호에 의한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 건축물 용도(중심지 미관지구에 한함)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2(절대 및 상대정화구역에 한함)						할 수 없	
			획지 1-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 및 건설비			하 규모의 50% 이상이	주택을 60% 어야 함	이상 건설	하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	
	건축한계성	 대로1-11호선변 : 6.0m 지정 중로1-57호선변 : 6.0m 지정 중로3-325호선변 : 6.0m 지정 소로2-52호선변 : 6.0m 지정 소로3-34호선변 : 6.0m 지정 인접대지경계선 : 3.0m 지정 								
:	재건축소형 건설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완화 및 소형 주택(전용60㎡이하) 건설 등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 30% = (485 - 450) × 30% = 10.5% 소형주택 의무 건설면적 : 13,029.5 × 10.5% = 1,368.09㎡ 이상 ※ 사업시행인가 시 소형주택면적 확정으로 건설면적 변경될 수 있음. 								
	완화기준적	용	·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410.0% + 공공시설부지제공 58.7% = 468.7% - 계획용적률 : 450.0% 이하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환경	자연환경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기존구역 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 공간 확장	
보전	생활환경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 대책 마련	
	수재해	 본 정비구역은 평탄한 지형으로 침수 등 수재해에 대한 우려가 없으나, 집중호우시 구역내로 유입되는 수량 등을 감안하여 정비구역 주변에 적정 우수관망 계획 수립 	
재난	산사태	 사면에 대하여 토질의 종류에 따른 안정구배를 유지토록 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한 사면안정과 경관적 처리를 통하여 토사의 유출을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방지	지 진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E급)을 받은 롯데 우람아파트는 지진 발생시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음 따라서 이를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의 벽식구조로 건설을 하며, 내화 재료 사용 및 내진설계를 통한 설계시행이 필요 	
	화 재	 정비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본 정비구역 반경 500m 이내에 석남초등학교, 천마초등학교, 가좌여자중학교, 경인여자고등학교가 입지하고 있으며, 상대정화구역에 속함
- 따라서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금지행위나 불허시설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음
- 주변 학교의 학생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사업시행에 따른 학교 신설 계획은 없으며, 인천광역시 교육청 협의 후 부담금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음
-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가좌여자중학교와의 거리는 약 60m로 공사착공전 설계도면에 따른 학교부지의 예측일조량을 실시하여 일조량에 의한 학습 환경 지장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겠음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착공 전 정비 구역 진출입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가드펜스, 반사경, 점멸등)을 설치하겠음

8.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이하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
 - 소형주택(전용면적 60m²이하)

- 향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0조 4호에 의하여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조합설립 후 조합정관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시 변경이 될 수 있음
 - 세입자 주거 이전비, 분양 시 우선순위 선정
 - 정비사업 시행으로 기존 거주자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일반 이주대상자와 달리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보상에 대한 대책마련
 - 거주자, 거주세입자로 구분하여 현실적인 이주 및 보상비 지급에 대한 대책마련
 -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9. 정비사업시행계획(변경없음)

○ 시행방법 : 관리처분 방법

○ 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

시행인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변경없음)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ш¬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 고
ı	15,244.5	-	15,244.5	100.0	
일반상업지역	15,244.5	-	15,244.5	100.0	

○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_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대로1-11 중로1-15	3,804.8	256.3	15	_	구역내 해당내용

1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	דו או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חוד
기정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5,244.5	획지1	13,029.5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9	-	ı	9	-	

1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3.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 획 목 표	비고
건 축 획지1-1 한계선	ō T 1_1	도로변	폭 6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	폭 3m 지정	개방감 확보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역명	정비사업유형	구역면적	지정고시일	사업시행예정시기	비고
Э	-	288,821.7	-	-	
석남 2	주택재개발사업	51,447	2009. 06. 01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석남 3	주택재개발사업	20,450	2009. 09. 21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석남 4	주택재개발사업	72,269	2009. 06. 15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석남 5	주택재개발사업	58,652	2009. 09. 28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가좌주공2차	주택재건축사업	74,974.3	2009. 11. 30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청천3	주택재건축사업	11,029.4	2009. 06. 15	구역지정 일로부터 3년 이내	

○ 주택수급현황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단위: 가구(5년별)]

구분	주택점유 유형별 가구								비고
一十正	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무상	미상	-비고
인천시	823,023	498,592	175,978	109,010	14,583	3,692	21,168	_	
중구	30,559	16,459	7,103	3,831	808	219	2, 139	_	
동구	24,990	15,064	4,724	4,021	432	138	611	_	
남구	141,955	82,570	31,096	20,296	3,561	926	3,506	_	
연수구	84,744	50,029	15,711	13,460	3,806	221	1,517	_	
남동구	120,028	70,688	27,593	16,607	1,554	407	3, 179	_	
부평구	175,716	104,474	37,996	27,415	1,856	796	3,179	_	
계양구	102,176	66, 187	22,926	10,234	845	335	1,649	_	
서구	116,758	72,857	26,545	12,232	1,232	456	3,436	_	
강화군	21,045	16,738	2,109	761	300	147	990	_	
옹진군	5,052	3,526	175	153	189	47	962	_	

※ 자료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2010년도)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도면 가구		C1 T1 (2)		획 지	
도면 번호	번호	면적(㎡)	획 지	면적(㎡)	비고
- 1	15,244.5	1-1	13,029.5	주상복합용지	
		1–2	368	주차장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18.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기존 수목의 보전ㆍ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구 분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
현황분석	○대상지는 도심지로서 환경부 법적 보호종 및 보호수 등은 조사되지 않음 ○본 사업구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특별한 녹지는 존재하지 않음 ○아파트 단지지역에 식재된 수목은 단풍나무, 은행나무, 아카시아나무, 잣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등 총 260주가 분포함
향후계획	∘대상지내 활용 가능한 수목은 약 56주임 ∘사업시행전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1조(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 치) 및 제12조(나무은행)에 의거하여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서)에젠출하여 수목의 재활용 등에 관한 협의를 득하겠음

19. 기타사항에 관한계획(변경)

- 본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사항을 준용함
- (기정) 교통처리계획

구 분	위 치	교 통 처 리 계 획			
가로 및 교차로	-	∘주변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 운영방안 제시(3개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설에 따른 개선안 반영(213정거장)			
진출입	소로 2-52호선변	∘사업지 북측 진출 우회전차로 설치 - B=4.0m, L=45.0m(4.0m Set-Back)			
동 선	대로 1-11호선변	∘사업지 남측 진입 우회전차로 설치 - B=3.5m, L=108.0m(3.5m Set-Back)			
	-	∘계획주차 100% 지하주차장에 설치(용도별주차구획 분리설치)			
주 차	_	·사업지 북측 주민들을 위한 노외주차장 설치(16면), 기존 노상주차장 삭제(7면)			
	중로 1-57호선변	∘사업지 동측 서달로상에 자전거도로 설치 - B=2.0m, L=156.0m(2.0m Set-Back)			
대중교통 및	소로 3-34호선변	∘사업지 서측 보행자출입구와의 보행동선 연계를 위한 보도를 설치하고 단지내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가감속 차로 설치 - B=4.0m, L=120.0m(4.0m Set-Back)			
보 행	중로 1-57호선변	·서달로상 버스베이 설치(1개소)			
	_	∘보행동선 단절지점에 횡단보도 설치(3개소)			
	-	·자전거 보관소 각동 출입구에 분산배치(5개소)설치			
교통안전 및 기타	-	∘과속방지턱 추가설치(1개소) 및 이전설치(1개소) ∘주차안내 표지판 설치(1개소)			

○ (변경) 교통처리계획

구 분	교 통 처 리 계 획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안전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함(단, 비상차량은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의 출입을 허용함)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참조 			

20. 관련서류

○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 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